

<한국관세사회 귀중>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과 관세사의 대응

2024. 06.



社團
法人

韓國關稅學會

제 출 문

한국관세사회 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과 관세사의 대응】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06.

(사)한국관세학회

회장 송 선 욱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송 선 옥 교수 (백석대학교)

공동연구자 엄 광 열 원장 (영월산업진흥원)

한 상 현 교수 (남서울대학교)

최 준 호 교수 (백석대학교)

유 광 현 교수 (조선대학교)

방 성 철 교수 (건국대학교)

신 현 주 교수 (성결대학교)

||| 목 차 |||

제 I 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3

1. 연구의 방법 4

2. 연구의 범위 5

제 II 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통관제도 현황 9

제1절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9

1. 국경간 전자상거래 개념과 현황 9

2. 국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13

제2절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19

1. 국내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제도 현황 19

2.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24

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제도 31

4. 미국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제도 36

제III장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과 문제점 .. 45

제1절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영향과 정부 대응 현황 .. 45

1.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영향 45

2.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정부 대응 현황 55

제2절 관세행정 상의 문제점	60
1.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특별통관 방법의 불일치 문제	60
2. 소액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시 제공된 정보의 부정확성과 불일치 문제	64
3.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	69
4. 전자상거래물품의 면세범위 적정성 논란	72

제IV장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세사의 역할 확대방안 .. 77

제1절 관세행정의 개선방안	77
1.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특별통관 방법의 일치성 제고	77
2.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시 제출정보의 확대와 정확성 제고	80
3.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요건 확대	83
4. 소액면세제도의 개선	95
5. 통관 위험관리체계 구축	97
제2절 관세사의 역할 확대방안	102
1. 전자상거래물품 관세행정에서 관세사의 역할과 입지 강화	102
2.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에 있어 적정보수료 체계 구축	105
3. RPA 도입을 통한 관세사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109

제V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117
제2절 연구의 결론	121

<참고문헌>

127

표 목차

<표 II-1>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13
<표 II-2> 전자상거래물품 주요 국가별 수입통관 현황	14
<표 II-3>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	15
<표 II-4>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유형별 현황	16
<표 II-5> 전자상거래물품 주요 국가별 수입통관 현황	16
<표 II-6> 전자상거래물품 주요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	17
<표 II-7> 전자상거래물품 과세통관 현황	18
<표 II-8>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통관 유형 비교	24
<표 II-9>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26
<표 II-10>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27
<표 II-11> 관세감면 대상물품	33
<표 II-12> Section 321과 Entry type 86의 비교	41
<표 III-1>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45
<표 III-2> 월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	47
<표 III-3> 3개년 국가별 해외직구 상담 현황	50
<표 III-4> 3개년 유형별 해외직구 상담 현황	50
<표 III-5> 최근 1년간 C커머스 피해 경험 및 피해 유형	51
<표 III-6> C커머스 해외직구 이슈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 정도	52
<표 III-7> 중소기업을 위한 C커머스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	52
<표 III-8>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 현황	54
<표 III-9>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관련 제도 비교	62
<표 III-10>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	67

<표 III-11> 국제우편물 사전발송정보	67
<표 IV-1> 요청 가능한 거래정보	82
<표 IV-2> Entry Type 86 적용 시 통관유형별 대표 기재사항 비교	87
<표 IV-3> 우리나라와 미국의 목록통관 시 정보 제공 범위 비교	93
<표 IV-4> 해외직구 과세통관 건수 대비 인력 현황 추이	103

그림 목차

<그림 II-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	10
<그림 II-2>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현황 및 전망	12
<그림 II-3> 세계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12
<그림 II-4> 특송물품 수입개관	30
<그림 II-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절차	35
<그림 II-6> Entry Type 86 통관절차	40
<그림 III-1> 전자상거래물품 최근 수입 현황	46
<그림 III-2> 서울시 해외 온라인플랫폼 안전성 검사결과	49
<그림 III-3>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방향 ...	57
<그림 III-4>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	62
<그림 III-5> 특송물품 통관목록	63
<그림 III-6> 국제우편물 통관목록	63
<그림 IV-1> Entry Type 86 통관절차	87
<그림 IV-2> 사후 모니터링과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체계	95
<그림 IV-3>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설계도	9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디지털 무역의 확산에 따른 무역 거래형태의 다양화

- 2010년대 이후 인터넷 사용자의 급증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 물류 및 결제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이끌었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무역의 디지털화를 주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역 거래형태의 다양화가 진전되어 기존의 전통적인 B2B 거래에서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2020년 COVID-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음
 - 팬데믹의 영향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새로운 거래형태인 전자상거래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이 제거되면서 대부분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 결과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건수 면에서 약 2.7배 증가하는 빠른 성장세를 보임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진입으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건수는 전년 대비 36.7% 증가, 금액은 11.7% 증가하였음
- 2019년 국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건수는 42,988,678건에서 2023년 131,442,993건으로 306% 증가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초저가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중국에서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이 급증함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입 건수 기준 중국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하였음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초저가 전략의 기반에는 세계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여 세계의 공장이라 평가받고 있는 생산기반 아래에서 현재 약 10만 개가 넘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공급업체가 존재하여 저가의 생산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중국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인한 공급초과 물량이 존재하여 재고 소진을 위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고물가 시기의 진입도 저렴한 중국 제품의 수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임

□ 최근의 전자상거래물품 급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인체에 유해하고 사고 위험이 큰 용품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가품과 불량품 유통,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반품 및 환불절차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흡함

○ 전자상거래물품이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각종 인증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함

○ 전자상거래 제도의 악용에 따른 조세 회피로 정부 재정 수입 감소가 우려됨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은 운송인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과 국제우편물 통관으로 구분됨
 - 특송물품 통관은 물품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분됨
 - 전자상거래물품 중 국제우편물로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들은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일반 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목록통관과 현장면세통관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으로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면제와 소액면제가 적용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에 따른 관세행정상의 대응방안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상술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려는 방안으로써의 관세행정상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2024년 5월 16일에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 금지와 위해 물품 관리를 위한 통관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함
 - 따라서 전자상거래물품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필수 사항인 통관 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의 차단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의 관세사의 역할 강화와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에 있어 적정보수료 체계 구축 등 관세사의 역할도 더욱 증대되는 방안으로 대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세사의 대응방안 제시임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소하려는 방안으로써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과 이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관세사의 대응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론적인 고찰로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관련 제도 분석,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 급증이 국내에 미치는 피해 현황과 원인 분석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도 이루고자 함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 상기에서 제기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학술 문헌을 분석 도구로 폭넓게 활용하는 문헌분석적 연구 방법을 기본적으로 채택하였음
- 이 방법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연구 방법임
- 본 연구의 문헌연구에서는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들이 발간한 정책보고서와 연구보고서,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문헌과 연구논문, 그리고 무역 관련 기구나 각종 단체와 기관들이 발간한 정기간행물 및 공식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음
- 본 연구는 관세법 등 우리나라 관세 법제 등을 주된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법리적 연구와 함께, 주요국들의 법제들을 상호 비교하는 비교론적 연구 방법을 모두 병행하여 연구하였음
- 그리고 국내외 관련 사례를 관련 부분에 인용하는 판례와 사례 분석적 연구 방법도 동시에 채택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제반 법규와 제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법리적인 측면의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음
-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분석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통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세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실증분석 방법을 병행 채택하였음

2. 연구의 범위

-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근거를 제시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분석을 위해 관련 개념 정리와 전 세계 시장 규모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분석함
 - 우리나라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논의가 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대한 통계적인 근거를 제시함
 - 관세청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규모와 추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유형의 규모와 추이, 전자상거래물품의 주요 수입 국과 수입 물품, 전자상거래물품의 과세현황 등을 분석함
 -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함
- 국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제도 및 미국 목록통관 제도를 분석함
 - 관련 법령과 고시를 토대로 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제도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아울러 관세행정 개선방안 도출에서 언급되는 미국의 목록통관 제도에 대해 분석함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이 국내에 미치는 피해 현황과 원인을 분석함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소비자 안전,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와 역차별 논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상술한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세사의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제 II 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통관제도 현황

제1절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제2절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제Ⅱ장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통관제도 현황

제1절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

1. 국경간 전자상거래 개념과 현황

□ 전자상거래(e-Commerce) 개념

○ 전자상거래 개념

- "전자적인 방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로 정의
- "기업, 정부 기관과 같은 독립적인 조직간 또는 이러한 조직들과 개인 간에 다양한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의

○ 전자상거래의 대상

- 물리적 재화, 음악, 영화, 자문서비스 등 온라인상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

○ 참여 주체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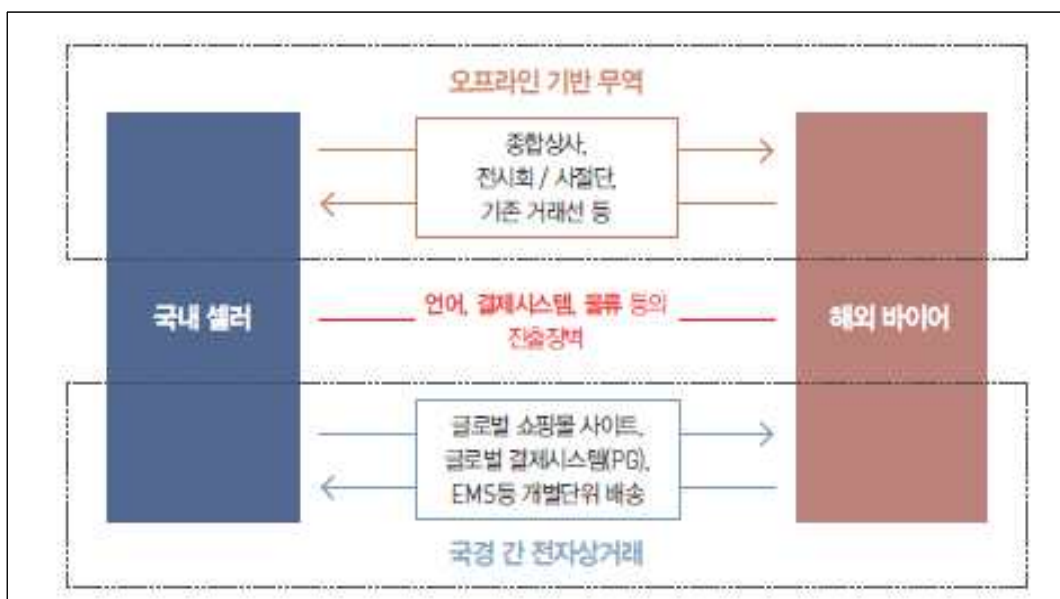
- B2B: 기업 간 거래(Business to Business)
-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usiness to Consumer)
- C2C: 소비자 간 거래(Consumer to Consumer)
- G2B: 정부와 기업간 거래(Government to Business)
- B2B2C: 기업 간 거래와 소비자 간 거래 결합 형태¹⁾

□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

○ 국경간 전자상거래 개념

- “소비자와 해당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업자 사이의 전자상거래”라고 정의
- 특정 플랫폼을 통해 상품 구매와 결제를 거친 후 국제물류를 통해 운송 수취하는 것으로, 일반 전자상거래와 달리 국제결제 및 물류, 수출입 통관이 필요

<그림 II-1>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개념



자료 : KITA, 해외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Kmall 24, 2015.

○ 국경간 전자상거래 유형 또한 B2B, B2C 등 참여 주체별로 구분됨

- 최근 B2C 형태의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 추세
-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목표 고객 거주지에 따라 해외 직구와 해외 역직구로 구분

1) 한국 제조사 → 중국 보세구역 내 전자상거래업체 → 소비자

○ 해외 직구와 해외 역직구 또는 해외 직판의 개념 비교

- 해외 직구는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이라 할 수 있음
- 해외 역직구 또는 해외 직판(해외직접판매)은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접속하여 국내 제품을 구입하는 형태로 판매자 처지에서 볼 때는 해외 직판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이라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현황과 전망

○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소매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에는 전 세계 소매 판매의 19% 이상을 전자상거래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 2027년에는 전자상거래 부문이 전 세계 소매 판매의 4분의 1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함²⁾
- 2024년 전자상거래 매출은 6조 달러를 돌파하고, 전체 소매 판매의 20.1%가 전자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³⁾이 11.8%로 전 세계 20개국 중 소매 전자상거래 발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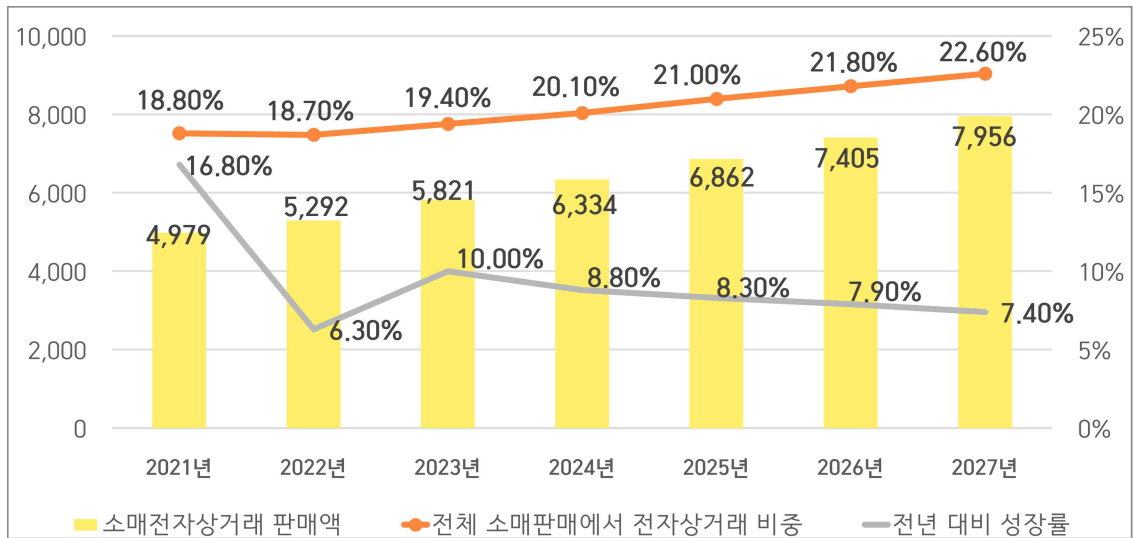
○ eMarketer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판매 상위 10대 국가는 1위 중국(52%), 2위 미국(19.0%), 3위 영국(4.8%), 4위 일본(3.0%), 5위 한국(2.5%), 6위 독일(2.1%), 7위 프랑스(1.6%), 8위 인도(1.4%), 9위 캐나다(1.3%), 10위 스페인(0.72%) 등으로 나타남⁴⁾

2) Daniela Coppola, 2024

3) 수년간의 성장률을 평균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는 매년의 성장률을 단순 평균한 것이 아니라, '첫 회부터 매년 일정한(평균적인) 성장률을 지속한다고 환산할 때의 성장률'을 의미한다(<https://mynotepad.tistory.com/261>).

<그림 II-2> 전 세계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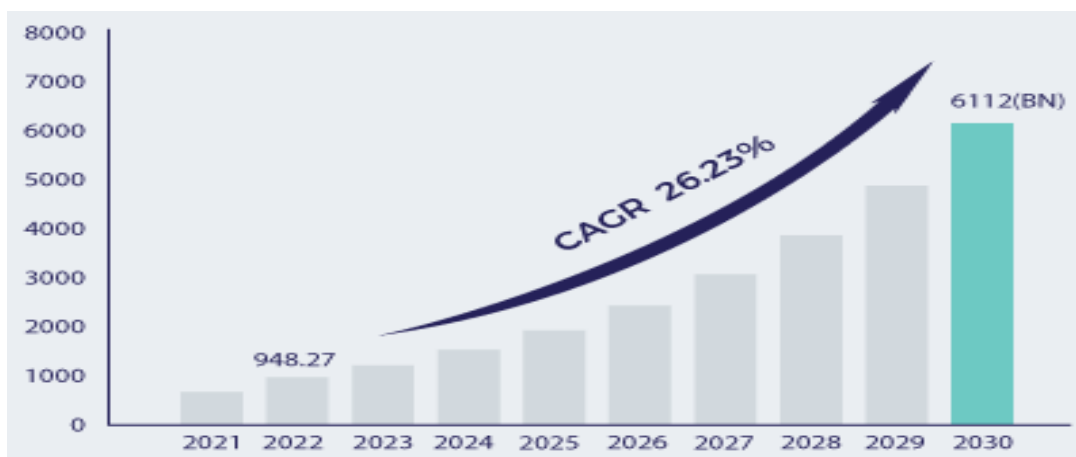
자료 : eMarketer(2024). Global E-commerce Forecast 2024.

□ 국경간 전자상거래 현황과 전망

-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948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까지 6,112억 달러에 도달하고 2023~2030년 예측 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 26.23%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그림 II-3> 세계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2023~2030)

(단위: 억 달러)



자료 : SNS INSIDER (2022)⁵⁾

4) eMarketer, 2024

5) <https://www.snsinsider.com/reports/cross-border-b2c-e-commerce-market-1947> (2024.05.30.)

2. 국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동향)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건수는 전년 대비 36.7% 증가, 금액은 11.7% 증가하였음
- 2019년 국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건수는 42,988,678건에서 2023년 131,442,993건으로 306% 증가하였음
- 금액 기준으로는 2019년 31억 4300만 달러에서 2023년 52억 7800만 달러로 168% 증가(2010년 2억 7400만 달러에 비해 약 19배 증가)

<표 II-1>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	6,358만 건	8,838만 건	9,613만 건	13,145만 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35%	41%	10%	37%
전체 수입 건수 중 전자상거래 비중	81%	85%	87%	89%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2024),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건수 기준 중국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하였음
- 해외 직구의 90% 이상이 중국, 미국, 일본에서 발송된 상품임

<표 II-2> 전자상거래물품 주요 국가별 수입통관 현황(2019~2023)

(단위: 건, 천 달러)

	2019			2020			2021		
	국가	총합		국가	총합		국가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계	42,988,678	3,143,211	계	63,575,333	3,753,758	계	88,379,617	4,658,358
1	미국	19,148,188	1,534,002	중국	27,483,467	704,980	중국	43,954,314	1,072,942
2	중국	11,605,298	403,152	미국	22,173,502	1,602,538	미국	28,290,711	1,860,860
3	독일	3,042,407	262,064	독일	3,773,181	331,787	독일	4,245,470	417,858
4	홍콩	2,918,456	184,768	홍콩	3,214,535	209,694	홍콩	3,398,792	227,152
5	일본	2,718,213	179,731	일본	2,668,103	198,451	일본	3,509,397	288,891
6	영국	1,240,255	316,862	영국	1,485,215	375,072	영국	1,408,748	300,763
7	호주	607,868	42,030	호주	769,226	57,064	호주	877,331	66,138
8	프랑스	457,145	49,230	프랑스	418,325	54,124	프랑스	554,128	89,225
9	기타	1,250,848	171,371	뉴질랜드	372,820	24,841	뉴질랜드	509,903	33,614
10	-	-	-	캐나다	238,070	27,189	캐나다	369,482	41,032
-	-	-	-	기타	978,889	168,018	기타	1,261,341	259,884

<표 II-2 계속>

	2022			2023		
	국가	총합		국가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계	96,119,836	4,724,711	계	131,442,993	5,278,418
1	중국	52,154,165	1,487,446	중국	88,815,449	2,358,883
2	미국	27,314,152	1,586,273	미국	25,360,687	1,453,288
3	일본	4,386,357	331,277	독일	3,475,205	296,433
4	독일	4,082,889	391,659	홍콩	3,988,662	233,885
5	홍콩	3,262,610	224,441	일본	5,247,039	363,691
6	영국	1,135,551	206,206	영국	959,486	153,911
7	호주	990,233	63,264	호주	1,068,653	64,964
8	프랑스	546,596	90,954	프랑스	371,201	64,901
9	뉴질랜드	474,906	30,834	뉴질랜드	387,102	26,632
10	캐나다	369,334	42,128	캐나다	394,062	42,273
-	기타	1,403,043	270,228	기타	1,375,447	219,555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동향

- 2023년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 반입비중은 건수 93%, 금액 22%임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 비중은 2017년 71%에서 2023년 93%로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은 목록통관 비중이 74%, EDI 수입신고(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 비중이 26%임
 - 2019년은 목록통관 비중은 59.4%, EDI 수입신고 비중은 40.6%
 - 특히 2019년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중 목록통관 중 중국 목록통관 비율은 약 26%였지만, 2023년에는 약 84%에 달함

<표 II-3>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2019~2023)

(단위: 천 건, 백만달러, %)

	특송(목록통관 및 EDI 수입통관)						국제우편물(EDI 수입통관)					
	특송(A)		전자상거래(B)		비율(B/A)		국제우편물(A)		전자상거래(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52,536	19,952	42,988	3,143	82	16	37	138	3	3	8	2
2020	73,066	22,216	63,575	3,754	87	17	29	115	2	3	7	3
2021	97,902	23,654	88,380	4,658	90	20	32	90	3	5	9	6
2022	105,088	24,491	96,120	4,725	91	19	39	116	4	5	10	4
2023	141,128	23,669	131,443	5,278	93	22	40	110	3	4	8	4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동향

<표 II-4>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유형별 현황(2019~2023)

(단위: 천 건, 천 달러)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25,549	1,291,953	17,439	1,851,258	42,988	3,143,211
2020	40,722	1,575,044	22,853	2,178,714	63,575	3,753,758
2021	58,553	1,975,198	29,827	2,683,159	88,380	4,658,358
2022	64,500	2,115,609	31,620	2,609,102	96,120	4,724,711
2023	96,929	2,742,239	34,514	2,536,178	131,443	5,278,418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동향

<표 II-5> 전자상거래물품 주요 국가별 수입통관 현황(2023)

(단위: 건, 천 달러)

국가	목록통관		EDI 수입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6,928,723	2,742,239	34,514,270	2,536,179	131,442,993	5,278,418
중국	81,390,419	1,820,204	7,425,030	538,680	88,815,449	2,358,883
미국	6,869,948	447,914	18,490,739	1,005,374	25,360,687	1,453,288
독일	1,285,026	79,269	2,190,179	217,165	3,475,205	296,433
홍콩	2,810,426	111,116	1,178,236	122,770	3,988,662	233,885
일본	2,846,802	172,930	2,400,237	190,761	5,247,039	363,691
영국	626,497	52,222	332,989	101,689	959,486	153,911
호주	545,741	24,174	522,912	40,790	1,068,653	64,964
프랑스	174,288	11,384	196,913	53,517	371,201	64,901
뉴질랜드	2,352	106	384,750	26,526	387,102	26,632
캐나다	65,139	4,777	328,923	37,496	394,062	42,273
기타	312,085	18,144	1,063,362	201,411	1,375,447	219,555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동향

□ 전자상거래물품 주요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입 건수 기준 전체의 17%를 가전제품이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줄곧 1위를 기록하던 건강식품을 제치고 수입품목 1위 기록

- 수입 상위 10대 품목은 가전제품, 의류, 건강식품, 신발류, 기타 식품, 완구인형, 핸드백 가방, 화장품 향수, 시계, 서적류 순임

<표 II-6> 전자상거래물품 주요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2019~2023)

(단위: 건, 천 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	품목	합계	합계	합계	합계	계
	건수	42,988,678	63,575,333	88,379,619	96,119,836	131,442,993
	금액	3,143,211	3,753,758	4,658,358	4,724,711	5,278,418
1	품목	건강식품	건강식품	건강식품	건강식품	가전제품
	건수	9,840,038	12,347,765	15,378,927	15,295,108	22,169,508
	금액	617,686	746,401	884,219	821,639	638,209
2	품목	의류	가전제품	가전제품	가전제품	의류
	건수	6,846,701	10,341,206	13,323,285	13,852,476	18,186,002
	금액	562,073	422,006	499,198	466,507	927,973
3	품목	가전제품	의류	의류	의류	건강식품
	건수	5,840,338	8,079,504	11,377,574	11,694,759	15,777,931
	금액	355,517	672,279	832,619	821,791	829,032
4	품목	기타 식품	기타 식품	기타 식품	기타 식품	신발류
	건수	3,908,485	5,346,834	7,760,594	7,530,698	8,492,773
	금액	177,050	222,538	314,698	302,988	478,659
5	품목	화장품	화장품	신발류	신발류	기타 식품
	건수	3,731,438	3,499,052	4,324,457	6,057,732	7,142,823
	금액	145,167	152,631	344,086	401,910	291,692
6	품목	신발류	신발류	화장품	완구인형	완구인형
	건수	2,612,378	2,959,763	4,066,238	4,553,132	6,647,046
	금액	262,547	266,353	178,749	179,601	225,072
7	품목	완구인형	완구인형	핸드백 가방	화장품 향수	핸드백 가방

	건수	1,733,785	2,676,556	2,704,938	4,292,813	6,263,933
	금액	109,896	130,842	315,664	170,642	303,955
8	품목	핸드백 가방	핸드백 가방	서적류	핸드백 가방	화장품 향수
	건수	1,539,460	2,129,044	537,847	3,490,950	5,613,176
	금액	247,650	310,572	27,189	289,624	194,842
9	품목	서적류	서적류	시계	서적류	시계
	건수	263,881	376,141	442,036	563,178	1,197,070
	금액	16,160	20,300	30,250	23,224	33,978
10	품목	시계	시계	완구인형	시계	서적류
	건수	215,977	316,671	3,685,378	911,558	761,842
	금액	20,777	24,629	164,318	31,345	25,968
-	품목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건수	6,456,197	15,502,797	24,779,730	27,877,432	39,190,886
	금액	628,688	785,207	1,067,962	1,215,439	1,329,037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동향

□ 전자상거래물품 과세현황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건수 기준)은 면세통관 비중이 98%, 과세통관 비중이 2%로 대부분 소액물품이 반입되고 있음. 금액 기준으로는 면세통관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에는 건수 기준으로 면세통관 비중이 95%, 금액 기준으로 면세통관 비중이 73%임

<표 II-7> 전자상거래물품 과세통관 현황

(단위: 천 건, 천 달러)

	면세통관		과세통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41,006	2,230,942	1,982	912,269	42,988	3,143,211
2020	61,011	2,705,608	2,564	1,048,150	63,575	3,753,758
2021	85,283	3,373,872	3,096	1,284,485	88,380	4,658,358
2022	93,402	3,602,295	2,718	1,122,416	96,120	4,724,711
2023	128,898	4,323,600	2,545	954,818	131,443	5,278,418

자료 : e-나라지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동향

제2절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제도

1. 국내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제도 현황

1)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제도 개요

□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관련 주요 개념

○ 국내 구매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개념

- 전자상거래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 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⁶⁾
-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⁷⁾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함⁸⁾

○ 국내 구매자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를 말함⁹⁾

○ 전자상거래업체란 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업자, 통신 판매중개자, 구매대행업자, 배송대행업자로 구분되고 있음¹⁰⁾

□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개념

6)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2호

7)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3호에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혼용하여 사용함

8) 관세법 제2조19호

9)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4호

10)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1호

○ 수입통관의 개념

-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함¹¹⁾
- 통관이란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함¹²⁾

○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개념

- 모든 물품의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함
- 다만 동조의 제2항에 의해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과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탁송품 또는 국제우편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신고 생략 또는 간이신고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6조의2(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등에 의해 특별통관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11) 관세법 제2조1호

12) 관세법 제2조13호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¹³⁾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¹⁴⁾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¹⁵⁾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¹⁶⁾

2)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유형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은 운송인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과 국제우편물 통관으로 구분됨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물품 통관
 - 특송물품 통관은 물품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분됨
 - 목록통관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미국 수입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목록통관 특송물품)이 대상임

13) 이 고시는 「관세법」 제25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4)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택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택송 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5)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제256조부터 제2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16)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간이통관

-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간이신고 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할 수 있음¹⁷⁾

○ 일반 수입신고

-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함

○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전자상거래물품의 국제우편물 통관

○ 전자상거래물품 중 국제우편물로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들은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일반 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장면세통관

-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국제우편물 또는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징수 없이 면세통관 할 수 있음¹⁸⁾

○ 간이통관

-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

17)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18)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국제우편물(간이통관대상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 생략함¹⁹⁾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함
-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음

○ 현장과세통관²⁰⁾

- 특정 요건²¹⁾을 모두 갖춘 간이통관대상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할 수 있음
-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국제우편물 제외

○ 수입신고

- 국제우편물의 특별통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를 해야 함
 -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 수취인이 수입 신고하려는 물품

19)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20)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21) -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국제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 국제우편물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표 II -8>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 유형 비교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수입신고 및 면세 여부
▶ 목록통관 - 미화 150\$ 이하	▶ 현장면세통관 - 미화 150\$ 이하	수입신고 없음 면세
▶ 간이통관 - 미화 150\$ 초과 ~ 2,000\$ 이하	▶ 간이통관 - 미화 150\$ 초과 ~ 1,000\$ 이하 - 간이통관신청서 제출	수입신고 - 특송물품은 필요 - 국제우편물은 생략 세금 납부
	▶ 현장과세통관 - 특정 요건 갖추면 간이통관 신청과 관계없이 부과 고지 후 통관	
▶ 일반 수입통관 - 미화 2,000\$ 초과	▶ 일반 수입통관 - 미화 1,000\$ 초과	수입신고 필요 세금 납부

2.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 탁송품(託送品)의 개념

-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 출입 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함²²⁾
- 기타 서류 및 소액 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²³⁾의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22) 관세법 제2조 18호

23)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4항

- 탁송품은 “특급탁송 물품(특송물품)”이라고 하므로 일반적으로 특송물품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 탁송품의 특별통관

- 탁송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²⁴⁾
 - 물품의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국가
 -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탁송품 운송업자는 사실과 다른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안됨²⁵⁾
-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²⁶⁾

□ 특송물품의 신고 구분과 수입신고 절차

○ 목록통관

-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목록통관특송물품)이 대상임
- 운송인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²⁷⁾

24)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25)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

26) 관세법 제254조의2 제3항

- 개인(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제출함²⁸⁾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별표 3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함

<표 II -9>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2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2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단서

○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할 수 있음²⁹⁾
-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 없이 인터넷 · 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함
-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 해야 함

<표 II-10> 간이신고 배제대상 물품

1.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3.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4.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 물품
5.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6.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7.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8. 「이사 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9.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0.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11. 「관세법」 제 240조의2에 따른 유통 이력 신고대상 물품

2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2호

○ 일반통관

- 물품 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함³⁰⁾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터넷통관포털 서비스 이용하여 P/L신고를 원칙으로 수입신고서와 신고자료를 전송함³¹⁾

□ 특송물품의 반입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을 통관³²⁾

- 특송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하여 세관공무원의 X-Ray 검색기 검사 등을 거친 후 통관³³⁾

○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에 필요한 탁송품 검사설비 기준, 설비이용 절차, 설비이용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³⁴⁾
- 세관장은 특송물품을 컬러로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양방향 X-Ray 검색기 및 실시간 X-Ray 정밀판독시스템, 자동분류기 등의 검색 및 검사시설을 구비하는 등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통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세관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³⁵⁾

30)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3항

3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32) 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

3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1항

34) 관세법 제254조의2 제8항

3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제2항

□ 특송물품의 검사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특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하게 해야 함
- 세관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하여 사전 정보 분석하여 우범 화물 선별검사를 할 수 있으며,³⁶⁾ 해당 내용을 특송업체에게 통보해야 함
 -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 특송업체, 물품발송인, 물품수신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검사대상이더라도 대상 특송물품이 물품발송인, 품명, 규격, 발송국,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등이 동일하여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으로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특송업체의 검사요청 의무³⁷⁾

- 특송업체는 X-Ray 검색기 등 검색 장비 운용과정, 물품 취급 및 통관서류 작성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함
 - 물품발송인이나 물품수신인의 주소가 통상적인 주소로 보기 어려운 장소이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된 경우
 - 수입통관 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36)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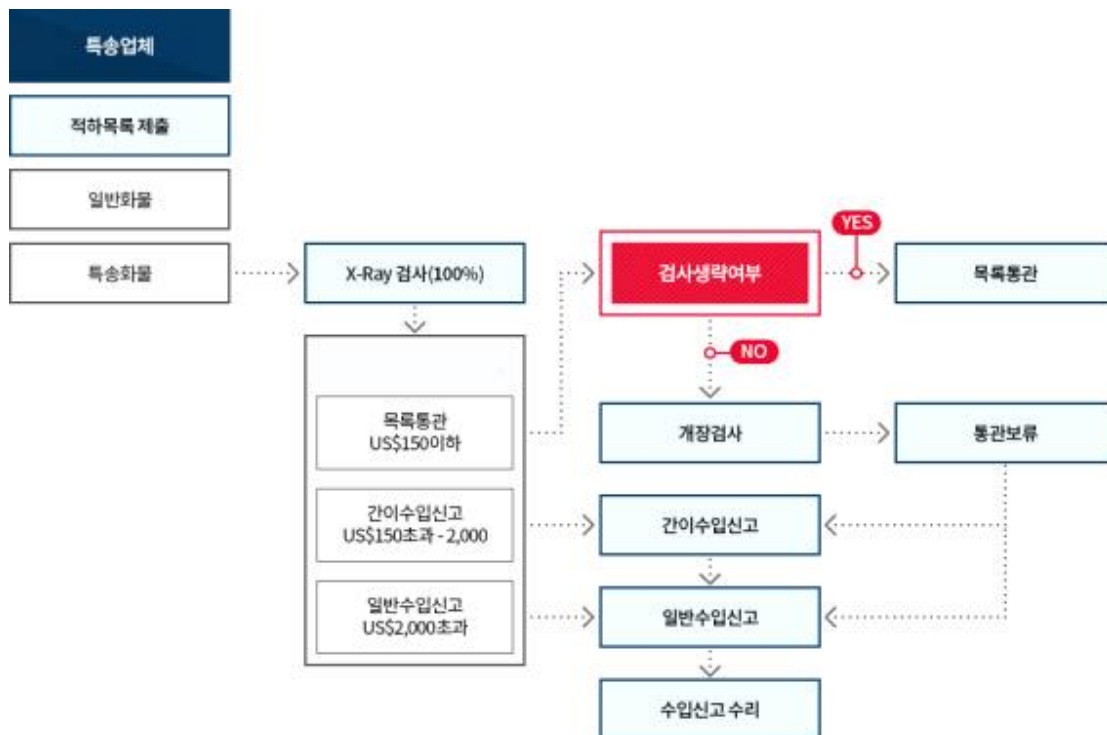
3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 동일 주소지 또는 전화번호로 여러 건의 물품이 분할하여 배송되는 경우
- 은닉 포장 등 특송물품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
- 마약·총기류·국민건강 위해 물품 등 불법물품의 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 특송물품의 신고 수리

- 목록통관 특송물품은 세관장의 검사 및 심사가 종료된 후에 통관
- 세관장은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및 심사가 종료한 후에 수리

<그림 II-4> 특송물품 수입개관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제도

□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

- 관세법 24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의해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국제우편물의 특성상 소액 면세물품 비중이 높음

□ 국제우편물의 수입통관 절차

- 수입하려는 국제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야 함³⁸⁾
- 해당 국제우편물 발송 전에 세관 신고정보를 포함한 사전전자정보³⁹⁾를 제공받은 경우 발송국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 사전전자정보 제출대상국에서 발송한 국제우편물 중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되지 않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반송 가능함
- 세관장은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통해 국제우편물의 검사, 국제우편물의 과세 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그 밖에 국제우편물 통관 및 감시·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38) 관세법 제256조

39) 관세법 제2조 제9호,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만국우편협약)에 따라 국제우편물 발송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국제우편물이 도착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 사전통관정보(Item attribute pre-advice: ITMATT): 국제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서, 국 제우편물번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총수량 및 총중량, 개별 국제우편물의 품명·수량·중량 및 가격, 그 밖에 수입하려는 국제우편물에 관한 통관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 사전발송정보(Pre-advice of despatch: PREDES): 개별 국제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로서, 국제우편물 자루번호 및 국제우편물번호, 발송·도착 예정 일시, 발송국·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의 명칭, 운송수단, 그 밖에 수입하려는 국제우편물에 관한 발송정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 국제우편물목록 제출

- 통관우체국장은 수입 국제우편물이 접수되면 국제우편물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⁴⁰⁾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면세통관한 국제우편물의 국제우편물목록은 해당 국제우편물을 배송한 후에 제출할 수 있음
- 통관우체국장은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국제우편물목록의 제출을 생략함

□ 국제우편물 신고 구분과 수입신고 절차

○ 현장면세통관

- 현장면세통관이란 국제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없이 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함
- 현장면세통관대상 국제우편물이란 수입신고대상 국제우편물을 제외하고, 관세법 제94조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물품을 말함

○ 현장과세통관

- 현장과세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함
- 현장과세통관대상 국제우편물이란 간이통관대상 국제우편물 중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국제우편물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으면서 동시에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을 말함

40)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우편물목록 제출) 1항

○ 간이통관

-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간이통관 신청 절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함
- 간이통관대상 국제우편물이란 일반 수입신고대상 국제우편물을 제외하고,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과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해당하는 국제우편물을 말함

<표 II-11> 관세감면 대상 물품⁴¹⁾

감면 물품
-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참조 : 자가사용인정기준).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나. 동일날짜에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 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41) 관세법 제94조, 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 일반 수입신고

- 수입신고대상 국제우편물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며, 수입제한품 목이면 품목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 첨부 필요

□ 국제우편물의 검사

○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우편물에 대해 사전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우범 국제우편물로 선별할 수 있음

- 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 발송인, 수취인, 출발지, 품명,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하여 반입 국제우편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선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관우체국의 장은 접수된 국제우편물에 대해 국제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⁴²⁾,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제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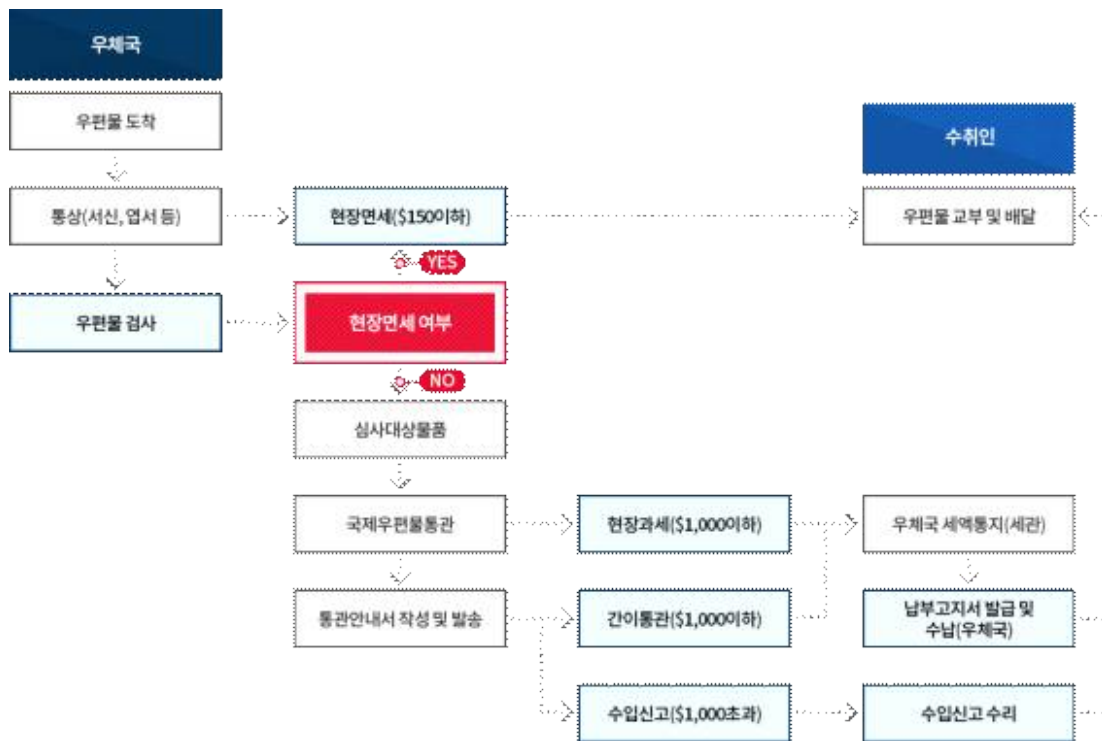
○ 사전전자정보가 제출된 국제우편물의 경우 국제우편물목록 제출을 생략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음

42) 관세법 제257조 제1항

○ 검사대상 및 방법⁴³⁾

- 검사는 X-ray 검색기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X-Ray 검색기 검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이나 X-Ray 검색기 검사결과 사회안전 위해 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등 현품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검사를 할 수 있음
- 통관우체국장은 국제우편물의 검사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함

<그림 II -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절차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

4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4. 미국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제도⁴⁴⁾

-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관세청, 국경보호, 동식물 검역 등을 관리하고 있음
 - 주요 업무는 세관, 이민, 국경 보안 및 농업 보호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임
 - 통관 관련 기본법으로는 연방 법전 제19편 관세의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하위 규정인 연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특송에 대해서는 연방규정의 Part 128. Express Consignments)에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특송물품 통관유형은 소액통관, 약식통관, 일반통관으로 구분됨
 - 8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며 소액이기 때문에 면세가 적용됨
 - 800달러 초과, 2,500달러 이하는 약식통관, 2,500달러 초과 물품은 일반통관이 적용됨
- 특송업체의 적하목록 제출 의무
 - 특송업체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물품 원산지, 송하인 관련 정보, 최종 수하인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된 적하목록을 물품 도착 전에 제출해야 하며, 특송업체는 원활한 통관처리를 위한 장비 설치와 CBP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검사대상 추출 또는 신속하고 적법한 물품반출을 유도하고 있음

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제도 비교연구. pp.27~50 요약 발췌함

□ 미국의 목록통관 제도

○ 800달러⁴⁵⁾ 이하의 소액물품

- 해당 물품에 대해 적하목록 방식인 Section 321 또는 ACE(전자통관시스템) 전자통관 방식인 Entry Type 86을 통해 목록통관을 하고 있으며, 1인당 하루 구매한 물품들의 합산가격이 800달러 이하면 상기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함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기준과는 다르게 개인과 법인 유무, 자가사용과 상용의 구분 없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수입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물품에만 적용됨

- FDA(식약청) 관리 품목 중 식품,약품,의료용품,화장품,사료용품,완구류 등
- USDA(농림부) 관리 품목 중 농축산물 등
- NOAA(대기해양청) 수산물 등
- CPSC(소비자 보호 안전위원회) 관리 품목 중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자전거 등
- EPA(환경보호청) 관리 품목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 FCC(연방통신위) 관리 품목 중 휴대전화, 블루투스 제품 등 주파수 발생품목 등

○ 800달러 이하 저가 선적품의 경우 관세 및 각종 세금⁴⁶⁾이 면제됨

45) Total fair retail value(총 공정소매가격) 기준임

46) 물품취급수수료, 항만유지수수료 등이 면제됨

□ Section 321을 통한 적하목록에 의한 반출

- 적하목록이나 B/L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서류에 의한 통관방식이며, 제품의 원산지, 송하인 성명, 주소, 국적, 최종 수하인 성명과 주소, 제품의 상세 명세, 수량, 선적 중량, 가격 등이 제공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적하목록 통관방식은 특송업체가 제출한 적하목록 등 서류에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서류만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임
 - 해당 방식은 CBP가 물품 정보는 확보할 수 있지만, 판매자 등 세부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 마약 등의 위해 물품, 무기류 등 테러 물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품 등에 대한 검사선별에 한계가 존재함
- Section 321을 통한 수입통관 시 소액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FDA 등 다른 정부기관(PGAs)이 요구하는 수입요건확인 사항과 관세 및 기타 내국세 등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 Section 321 Data Pilot 시범사업

- 특송물품 정보 관리를 위해 CBP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특송업체로부터 주문, 결제, 물류 정보를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이를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음
 - 2019년 도입되어 2023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해당 시범사업에는 특송업체로는 FedEx, DHL, UPS가 참여하고 있음
- 자격요건은 CBP에게 전자적 데이터를 제출 및 현존하는 point-to-point 연결을 통해 메시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함
 -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참여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을 통해 CBP와 데이터 교환이 가능해야 함
- CBP에 전송해야 하는 공통 데이터들은 Originator Code, 운송인 또는 운

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참여자의 형태, 선적품 추적번호 또는 House B/L 번호(Master B/L 번호) 중 하나, 운송형태에 대한 데이터 등임

○ 이외에도 참여 운송인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요소를 추가로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함

- 미국으로 향하는 선적 물품에 대해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인도 당사자 성명과 주소, 명세에 있어 적하목록 명세보다 상세한 물품 명세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포스팅된 제품의 소매 명세 등을 제공해야 함
- 운송인의 고객 정보 관련해서 운임의 지속적 지급과 무역 위반을 하지 않은 반복 고객으로의 화주를 확인해 주는 지표요소를 제공해야 함

○ 또한 참여 전자상거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함

- 매도인 성명과 주소, 가능한 경우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배송 당사자 성명과 주소, 플랫폼의 매도인 계정 번호와 매도인 ID, 가능한 경우 매수인 성명과 주소, 플랫폼에 포스팅된 제품 사진, 플랫폼상에서 수입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활성 링크, 플랫폼상의 제품 가격 등⁴⁷⁾

□ Type 86 방식 적용시

○ 전자통관시스템(ACE)을 통한 전자방식으로만 통관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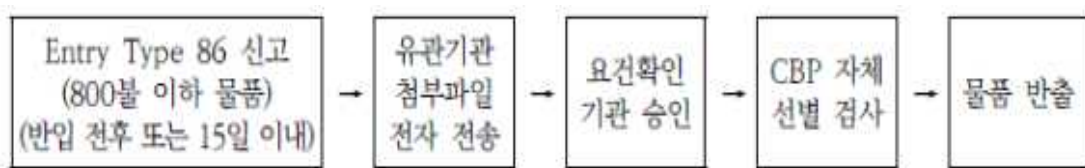
- 대상 물품은 운송수단의 구분과 관계없이 수입된 다른 정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선적품을 포함한 Section 321에서의 저가 선적품임

○ 소액 면세물품의 구매자, 수입자 또는 대리인 자격의 관세사 등은 반입 전후 또는 15일 이내에 10개의 데이터 항목이 포함된 Entry Type 86 신고를 해야 함

47) 송선욱(2022),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 모든 소액면세 적용 물품에 대해 HS Code 10단위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CBP와 정부 관계기관(PGAs)에 가시성을 높여주고 있음
- 유관기관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 Single Window 상의 문서 이미지 시스템(DIS)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첨부파일을 전자적으로 전송 및 회신함

<그림 II-6> Entry Type 86 통관절차



- 적하목록 통관방식보다 소요시간이 줄고 데이터 형식의 신고명세 확보가 가능하여 우범 화물 선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위험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가능함
- 실제 면세 한도가 2016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나면서 소액면세 통관이 증가하면서 전자통관 방식인 Type 86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표 II-12> Section 321과 Entry type 86의 비교

	Section 321	Entry type 86
신고제출방식	항구세관에 수동 제출	ACE를 통한 전자적으로 자동화된 화물반출 전송
타 정부기관 요구사항 있을 시	적용대상이 안됨	적용대상 됨
관세 및 기타 내국세 지불	없음	없음
신고 데이터	- 원산지 - 송하인 이름, 주소, 국가 정보 - 수하인 이름, 주소 - 수량 - 중량 - 수출신고금액 - 물품명세서	- 원산지 - 송하인 이름, 주소, 국가 정보 - 수량 - 수출신고금액 - HS code 10단위 - 운송서류 번호(B/L 또는 AWB) - 통관서류번호 - 미국 세관 항만 코드 - 요건확인물품 신고자 IOR 번호 - 요건확인물품 PSG 데이터 세트

자료 : 송선욱(2022)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제Ⅲ 장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과 문제점

**제1절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영향과
정부 대응 현황**

제2절 관세행정상의 문제점 분석

제Ⅲ장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과 문제점

제1절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영향과 정부 대응 현황

1.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영향

1)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 현황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은 건수 기준으로 2009년 251만 건에서 2023년 약 1억 3,144만 건으로 약 52배 증가하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2009년 166.8백만 달러에서 2023년 5,278.4백만 달러로 약 32배 증가하였고, 특히 2023년은 건수 기준으로 처음으로 1억 건을 넘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50억 달러를 넘었음
- 2023년 수입은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는 1.3배, 금액 기준으로는 1.1배 증가하여 수입 금액보다 수입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건수의 증가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의 사용량 증가로 보임

<표 Ⅲ-1>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단위 : 천 건, 천 달러)

연도	건수	금액	연도	건수	금액
2009	2,510	166,845	2020	63,575	3,753,758
2013	11,159	1,040,038	2021	88,380	4,658,358
2017	23,592	2,110,240	2022	96,120	4,724,711
2019	42,988	3,143,211	2023	131,443	5,278,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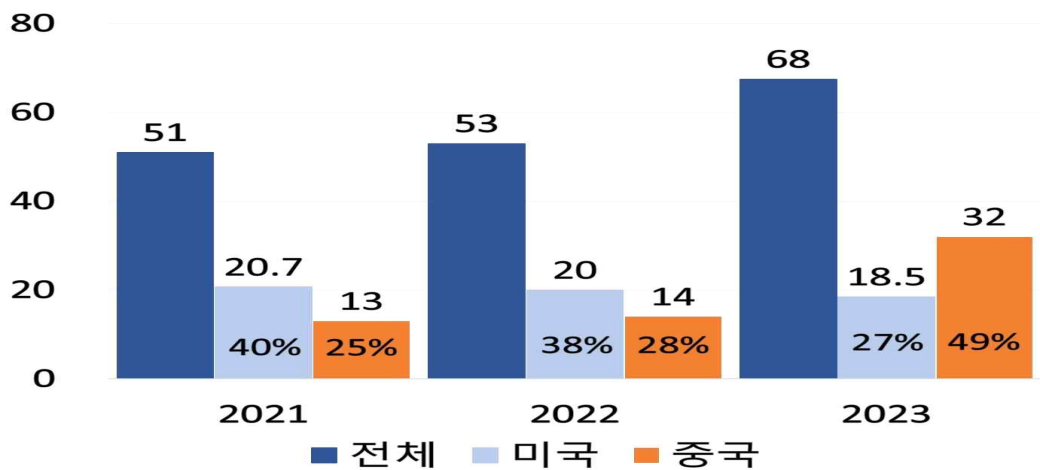
자료 : e-나라지표

- 이러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피해, 정부 재정 수입 감소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음

□ 국가별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 2022년까지 미국에서의 수입이 가장 많았으나, 2023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음
 -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전년 동기 70% 증가)
- 2023년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 6조 8천억원 중 중국업체 플랫폼 48.7%(전년 대비 28.3%) 차지

<그림 III-1> 전자상거래물품 최근 수입 현황



자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정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최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를 보면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쿠팡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으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초저가 전략과 광고 확대 등을 통해 각각 2,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23년 2월에는 이용자 수가 355만 명으로 국내 주요 플랫폼보다 낮았으나, 이후 이용자 수가 급증하여 24년에는 전체 2위에 오름
- 테무의 경우 23년 7월에 국내에 출시가 되었으나, 24년 2월에 4위에서 3월에는 3위까지 오름

<표 III-2> 월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수

(단위 : 만 명)

순위	플랫폼	‘23.2월	‘24.2월	‘24.3월
1	쿠팡	2,953	3,010	3,087
2	알리	355	818	888
3	테무	(‘23.7 출시)	581	830
4	11번가	944	736	740
5	G마켓	655	553	548
6	위메프	436	320	411
7	티몬	422	361	380

자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최근의 전자상거래물품 급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인체에 유해하고 사고 위험이 큰 용품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가품과 불량품 유통,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반품 및 환불절차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미흡함
 - 전자상거래물품이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각종 인증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함
 - 전자상거래 제도의 악용에 따른 조세 회피로 정부 재정 수입 감소가 우려됨

2)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 국민 건강 및 안전 위해물 품의 불법 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

- 서울시는 2024년 4월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주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을 통해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매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5월 말까지 총 7차례 유해물질 검출 결과를 발표함
- 4월 8일 첫 안전성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판매된 생활 밀접 제품 31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 실시 결과 8개 품목(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납시 장난감,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음
- 총 7차례의 안전성 검사결과 전체 조사 품목의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 검출됨⁴⁸⁾
 - 검사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93개 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됨
 - 검사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며, 완구 및 학용품과 장신구 등의 25개 제품에서 발견됨
 - 다음으로 납과 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었으며,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서 사용금지 방부제와 폼알데하이드 등이 검출됨
 - 또한 기계적 및 물리적 시험에 탈락한 제품은 총 9개로 날카로운 부분에 베임 및 긁힘과 작은 부품으로 인해 삼킴과 질식 등의 위험도 발견됨

48) 뉴시스, 해외직구 제품 매주 검사해보니, 2024.5.28.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28_0002750684)

<그림 III-2> 서울시 해외 온라인플랫폼 안전성 검사결과



자료 : 뉴시스, 해외직구 제품 매주 검사해보니, 2024.5.28.

○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안전성 성분검사 결과

-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2024년 4월의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됨
-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평균 구매 가격은 3,468원임)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⁴⁹⁾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음
-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⁵⁰⁾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⁵¹⁾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됨

49)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품이나 부분품'을 의미

50)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51)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
- 정식 수입 물품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성 검사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음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 증가로 인한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증가

○ 국가별로 중국, 미국 순으로 많으며, 유형별로는 환불 및 교환 거부와 제품하자와 A/S, 배송 문제 순임

<표 III-3> 3개년 국가별 해외직구 상담 현황

(단위: 건)

순위	2021	2022	2023
1	미국(383)	중국(365)	중국(886)
2	중국(339)	미국(221)	미국(257)
3	일본(159)	영국(69)	싱가포르(57)
4	영국(90)	싱가포르(50)	일본(51)
5	싱가포르(52)	일본(42)	프랑스(40)

자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정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표 III-4> 3개년 유형별 해외직구 상담 현황

(단위: 건)

유형별 구분	2021	2022	2023
취소, 환불, 교환 지연·거부	720	873	1,941
제품하자, 품질, A/S	231	300	774
미배송, 배송지연	331	276	762
사업자 연락두절, 사이트폐쇄	178	169	300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153	66	106

자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정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3) 국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

□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저가 전략으로 인한 국내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피해 급증

○ 자가소비용으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품목의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통해 무인증 품목 수입이 가능하며, 소액면세제도를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이로 인해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하는 국내 수입업자에 비해 인증 비용 및 관부세 면세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함

○ 중소기업중앙회⁵²⁾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피해 유형으로는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53.1%),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기업 역차별 피해(29.1%) 순으로 조사됨

<표 III-5> 최근 1년간 C커머스 피해 경험 및 피해 유형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과도한 면세 혜택)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 인증 관련 역차별)	매출 감소	기타
		관세와 부세 등 비용부담 없이 수입된 제품으로 인한 국내 제품의 상대적 가격경쟁력 저하	중국산 직구 제품을 저가하게 구매하여 도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자사의 특허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직구 제품이 국내 인증 및 법규 준수 없이 수입됨에 따라 인증을 받는 국내기업 역차별 발생		
전 체	(320)	53.1	40.0	34.1	29.1	15.0	1.6
업종	제조업	(112) 58.0	39.3	40.2	30.4	9.8	0.9
	도·소매업	(208) 50.5	40.4	30.8	28.4	17.8	1.9
매출액	10억 미만	(82) 46.3	45.1	30.5	29.3	14.6	1.2
	10~50억 미만	(114) 60.5	33.3	38.6	28.1	13.2	0.0
	50억 이상	(124) 50.8	42.7	32.3	29.8	16.9	3.2
종사자수	5인 미만	(96) 52.1	35.4	24.0	31.3	17.7	1.0
	5~30인 미만	(156) 55.8	41.0	35.9	26.3	15.4	2.6
	30인 이상	(68) 48.5	44.1	44.1	32.4	10.3	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4),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52) 중소기업중앙회(2024),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 C커머스 해외직구로 인해 기업의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80.7%임

<표 III-6> C커머스 해외직구 이슈로 인한 매출감소 영향 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① 매출 감소에 크게 영향 미침	② 매출 감소에 다소 영향 미침	③ 현재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매출 감소가 예상됨	④ 매출 감소에 영향이 없음	(①+②+③)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침/예상됨	(④) 매출 감소에 영향 없음
전 체		(320)	14.1	18.8	47.8	19.4	80.7	19.4
업종	제조업	(112)	10.7	18.8	54.5	16.1	84.0	16.1
	도·소매업	(208)	15.9	18.8	44.2	21.2	78.9	21.2
매출액	10억 미만	(82)	15.9	17.1	48.8	18.3	81.8	18.3
	10~50억 미만	(114)	14.9	22.8	47.4	14.9	85.1	14.9
	50억 이상	(124)	12.1	16.1	47.6	24.2	75.8	24.2
종사자수	5인 미만	(96)	21.9	14.6	44.8	18.8	81.3	18.8
	5~30인 미만	(156)	10.3	23.1	48.1	18.6	81.5	18.6
	30인 이상	(68)	11.8	14.7	51.5	22.1	78.0	22.1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4),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으로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61.6%),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 순으로 조사됨

<표 III-7> 중소기업을 위한 C커머스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

(단위 :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강화) 재판매 목적 직구 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 제도 강화 및 상시 단속 체계 마련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 특허·상표권 침해 행위자에 대한 민·형사 및 과징금 부과 강화	(국내 인증 의무 강화) 일부 직구 품목에 대한 KC 인증 획득 의무화 추진	(연간 면세 한도 설정) 중국산 직구 상품에 대한 연간 면세 한도 설정 추진	기타
전 체		(320)	61.6	42.5	42.5	35.0	1.3
업종	제조업	(112)	60.7	45.5	45.5	35.7	1.8
	도·소매업	(208)	62.0	40.9	40.9	34.6	1.0
매출액	10억 미만	(82)	59.8	41.5	43.9	35.4	1.2
	10~50억 미만	(114)	68.4	42.1	41.2	27.2	1.8
	50억 이상	(124)	56.5	43.5	42.7	41.9	0.8
종사자수	5인 미만	(96)	54.2	44.8	43.8	30.2	1.0
	5~30인 미만	(156)	65.4	40.4	42.3	36.5	1.9
	30인 이상	(68)	63.2	44.1	41.2	38.2	0.0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4),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

4) 소액 면세제도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와 불법 차단을 위한 관세 행정 비용 증가

□ 전자상거래 제도의 악용에 따른 조세 회피로 정부 재정 수입 감소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건수기준)은 면세통관 비중이 98%, 과세통관 비중이 2%로 대부분 소액물품이 반입되고 있음

- 금액 기준으로는 면세통관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건수 기준으로 면세통관 비중이 95%, 금액 기준으로 면세통관 비중이 73%임

○ 하나의 계약 건인 물품을 분할 반입하여 소액면세 범위 이하로 가격을 낮추어 소액면세 적용

○ 입항일이 같은 물품의 수입신고일자를 다르게 신고하여 소액면세 적용

- 고시 개정으로 인해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하여 2022.11.17.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판매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제3자 명의도용을 통해 소액면세 적용하여 수입 후 재판매

- 2023.10.30~11.28(30일간) 집중단속,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688억원 적발하였음

-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

○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경간 전자상거래 범죄 단속 결과, 지속적으로 단속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관세사범과 보건의사범은 건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지재권 관련 사범의 경우 21년에 비해 23년에 250% 이상 증가함

<표 III-8>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범죄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관세사범		지재권사범		마약사범		보건의사범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103	175	4	20	45	1	10	85	162	281
'22년	137	482	4	24	27	1	24	91	192	598
'23년	112	499	10	533	31	1	16	116	169	1,149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2024),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부정수입 물품 유통 주요 사례⁵³⁾

-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하여 타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53) 관세청 보도자료(2024),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2.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정부 대응 현황

1)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현황

□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현황

- 정부는 올해 3월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하여 위해 물품 반입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와 관련 업계의 불만·불편·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계획임
- 2024년 3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하여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국내법의 차별 없는 엄정 집행을 추진할 예정임

2)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약 2달간 20여 차례에 걸쳐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TF 회의를 통해 분야별 면밀한 검토를 통해 2024년 5월 16일에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4개 분야로 제시함

○ 소비자 안전 확보

- 물품 수입 관련 65개 법률 조사 → 위험도, 국민 편익, 통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각종 침해행위에 대한 대책도 검토
- 화장품법, 위생용품관리법, 약사법,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석면 및 납·카드뮴 함유제품 등은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 차단할 예정임

- 약사법 개정, 불법 의약품·의료기기 등 통관차단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금지품목은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임

○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강화

- 피해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실태 점검·조사와 함께 실효성 확보 수단 검토하여, 범정부 조사·점검을 통해 결과 공표 및 관련 조치 시행할 예정임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부과 등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자율협약 체결·핫라인 구축 등 병행할 예정이며, ‘소비자 24’를 개편해 공정위, 관세청, 식약처, 환경부, 국표원, 한국소비자원 등 12개 포털 운영 중인 분산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관리할 예정임

○ 기업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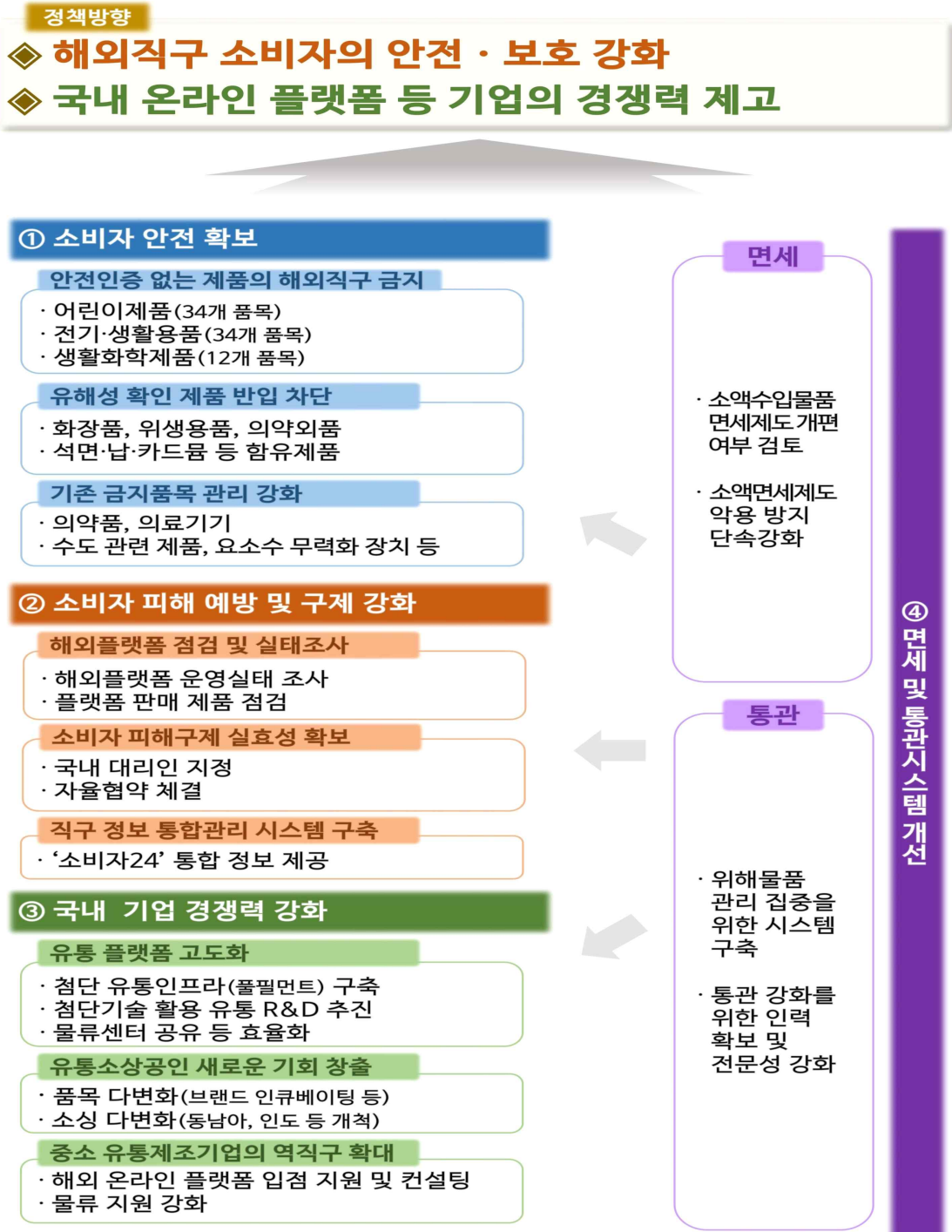
- 산업·중기부 중심 국내 유통 산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검토하고,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폴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추진할 예정임
-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 유통·제조기업의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위해 마케팅 등 지원 강화, 중소기업체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추진

○ 면세 및 통관시스템 개선

- 현행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의 개편 여부 검토(기재부), 면세 악용 사례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관세청) 등과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와 소액면세 악용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해 통관 서식 기재항목 확대,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 구축, 인력·전문성 보강 추진

<그림 III-3>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방향



자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3) 관세청 차원의 대응 현황

□ 관세청 차원에서의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증가에 따른 대응 현황

○ 수입 물품 안전성 성분분석 시행

- 관세청은 2020년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검사에서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되는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인 38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 검출 사실을 발표함

○ 국민 건강·안전 위해 물품 불법 수입,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정수입·탈세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활동 전개

- 관세청은 2022년 9월~11월 사이 10주간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특별 단속 활동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안전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식·의약품 등의 반입과 전자상거래 제도 악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과 전자상거래 간이통관제도 악용이 중점 단속대상이었음

○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예정 발표(2024.01.11.)

- 관세청은 '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됨
-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 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 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됨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2024.02.27.)

- 관세청은 2024년 2월 27일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 목표 · 8대분야 · 100대 과제를 수립함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마약 등 위해 물품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하여 운용하며, 실시간 우범 정보를 활용한 위해 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임
-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우범 패턴과 위험요소 등 AI 학습 데이터셋을 추출하여 최적화된 AI 알고리즘 선정을 통해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2024.04.26.)

- 급속히 확장되는 해외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전자상거래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대응도 시행했음

- 2022년 11월 17일부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입항일이 같더라도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면제하였으며, 2023년 7월 1일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통관우대업체’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상거래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으로 통관적체 해소 및 해외직구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

제2절 관세행정상의 문제점

1.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특별통관 방법의 불일치 문제

- 자가소비용 수입물품 통관에 관한 규정의 상이함으로 인해 제도의 복잡성 존재
- 운송형태에 따라 1차적으로 특송물품, 국제우편물로 구분하고, 2차적으로 자가사용 목적 여부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과 그 외 물품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중에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하고, 세부적인 적용은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함
 - 전자상거래물품이 아닌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은 해당 물품 관련 고시를 적용해야 함
 - 전자상거래물품이라도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격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수입통관을 적용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됨
-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운송 주체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됨
 - 동일한 물품이 특송업자를 통해 수입되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며, 우체국을 통해 수입되면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됨
-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적용되는 규정간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여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운송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짐

- 일반 수입통관 적용기준이 특송물품은 미화 2,000달러 초과, 국제우편물은 미화 1,000달러 초과로 기준이 상이함
- 간이통관의 경우에도 국제우편물은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이 적용 대상이지만, 특송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 수입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면서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물품이 적용대상임
- 특송물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지만,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구분함으로써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시 필요한 정보를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필수 기입), 전자상거래 유형(필수 기입), 해외판매자(통신판매업자)(선택 기입), 구매·배송대행업자(선택 기입), 통신판매중개자(선택 기입), 주문번호(선택 기입)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과 일반 물품의 구분없이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4호 서식인 국제우편물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고 이에 따른 HS 6단위 Code(예 610413)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물품이 아닌 특송물품은 HS 2단위(예 61) 또는 4단위/6단위 코드(예 6104/610413)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우편물의 경우 특송물품(전자상거래물품 포함)의 통관목록의 필수기재사항인 HS Code 기재란이 없음
- 관세법에서는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에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우편물의 경우 간이세율 적용 규정이 있지만 특송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표 III-9>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관련 제도 비교

특송물품	국제우편물	비고
• 전자상거래물품 (개인이 특송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만)	• 전자상거래물품 (개인이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하는 전자상거래물품만)	-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함
• 그 외 물품	• 그 외 물품	- 그 외 물품은 해당 물품 관련 고시를 적용함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반 수입의 경우)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반 수입의 경우)	

□ 결론적으로,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특별통관 방법은 일반 수입통관 적용의 기준, 간이통관 관련 수입신고 여부와 간이세율 적용, 정보제공의 범위에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III-4>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No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20. 거래코드 (A. 개인 전자상거래물품)	9. 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	11. 물품수신인 주소 Address	12. 품명 Description	14. 포장개수 carton	16. 중량 kgs	18. 발송국 Origin	21.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3. 화물문송 주선업자부호
6. House B/L No	10.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o	25. 물품수신인 우편번호 Zip Code	13. 규격 standards	15. 수량 piece	17. 물품가격 (US\$)	19. 품도구분 (1: 개인)	22. 전자상거래 유형	
				26. HS Code		27.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	29. 해외판매자 (통신판매업자)	24. 세관기재란
							30. 구매·배송대행업자	
							31. 통신판매증개자	
							32. 주문번호	

<그림 III-5> 특송물품 통관목록

(별지 제4호서식)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No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20. 거래코드 (D. 개인 일반물품 E. 상업용 견본품 F. 상업서류)	7.물품발송인 성명 Shipper Name	8. 물품발송인 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개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28. 물품발송인 전화번호 Phone No.						
6.House B/L No	9.물품수신인 성명 Consignee Name	11. 물품수신인 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 개입 2 파)	24.세관기재란
	10.물품수신인 전화번호 Phone No.	25.물품수신인 우편번호 Zip Code		26. HS Code		27.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가 : 개인통관고유부호, 나 : 생년월일, 다 : 통관고유부호, 라 : 사업자번호, 마 : 외국인등록번호, 바 : 여권번호)	

<그림 III-6> 국제우편물 통관목록

우편물목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

① 우체국명	② 우편물번호	③ 도착(반입)일자	④ 통관관리번호	⑤ 우편물종류	⑥ 총중량(g)	⑦ 우편요금	⑧ 발송국가	⑨ 발송인명		⑩ 우편물통관 구분	
	⑪ 수취인명	⑫ 수취인 주소	⑬ 우편번호	⑭ 수취인 연락처	⑮ 일련번호 (란번호)	⑯ 품명	⑰ 규격내용	⑱ 중량	⑲ 수량	⑳ 물품가격	㉑ 통화코드

2. 소액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시 제공된 정보의 부정확성과 불일치 문제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과 목록통관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23년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 반입 비중은 건수 93%, 금액 22%임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물품 비중은 2017년 71%에서 2023년 93%로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은 목록통관 비중이 74%, EDI 수입신고(간이신고 + 일반수입신고) 비중이 26%임

- 2019년의 경우 목록통관 비중은 59.4%, EDI 수입신고 비중은 40.6%

- 특히 2019년 전체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중 목록통관 중 중국 목록통관 비율은 약 26%였지만, 2023년에는 약 62%에 달함

□ 목록통관의 기재 내용 부실로 인한 물품 정보의 부족

○ 현재 소액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되고 있음

- 목록통관을 위한 통관목록 작성에 필요한 품명과 HS Code는 수출국의 제조 또는 유통업자가 판단해서 기재하기 때문에 수출자의 부정한 의도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기재된 통관목록 기재 내용과 실물의 상이함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송물품(전자상거래물품 포함)의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따르면 품명을 정확히 기재⁵⁴⁾해야 하며 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란별

54)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목 기재는 안됨

구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다수의 물품이 한 개의 포장에 들어있는 경우 통관목록 작성시 품목 하나만 기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뭉테기 통관’이라 불리는 편법적인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HS Code 기재란에는 복수 품명이면 대표품명의 품목 코드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서 복수의 품명이면 각각의 품명과 HS Code를 대조해서 확인할 수 없음
-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품명은 물품 특성(기능, 용도, 성분) 및 규격이 누락된 ‘불명확한 상품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관시 적용되는 표준품명과 불일치할 여지가 많음
- 현재 목록통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HS Code 정보로는 불법 및 위해물품의 사전 차단이 어려움
- 이로 인해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나 위해 물품 차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미국과 중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공급망(플랫폼 사업자, 운송인 등)으로부터 물류정보, 물품정보 등을 제공받음
-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수입물품과 운송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사전 제공받은 정보들을 관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입물품의 위법성과 위해성 등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범화물의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음
- 미국(Entry Type 86)과 같이 목록통관의 경우 HS 10단위 코드와 표준품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사전정보제공 여부와 정보 범위의 불일치

- 특송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항을 전후해서 통관목록 제출 또는 간이 신고의 경우 전자서류 제출이 되기 때문에 우범화물 선별에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없음
- 특송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통관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표지 제1호 서식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 양식과 같이 총 32종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국제우편물의 경우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장은 해당 국제우편물이 발송되기 전에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 사전전자정보는 「만국우편협약 및 최종의정서」와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이하 "만국우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우편물 발송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물이 도착국가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관신고에 필요한 정보로서 사전통관정보와 사전발송정보를 말함
- 사전통관정보는 국제우편물에 관한 전자적 통관정보로 과세대상 유무에 따라 과세대상이 아닌 우편물(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과 과세대상 우편물(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로 구분됨. 특히 과세대상이 아닌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8종의 정보만 제공됨
- 사전발송정보는 서신을 제외한 모든 우편물의 사전발송정보로, 개별 국제우편물이 들어 있는 우편 용기에 관한 전자적 발송정보임

<표 III-11> 국제우편물 사전통관정보

과세대상이 아닌 국제우편물(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사전통관정보
① 발송인 성명(Consignor, name) ② 발송인 주소(Consignor, address) ③ 수취인 성명(Consignee, name) ④ 수취인 주소(Consignee, address) ⑤ 포장수량(Number of Packages) ⑥ 총중량(Total gross weight, including measure unit qualifier) ⑦ 물품설명(Brief cargo description) : 품명, 규격, 수량 등 ⑧ 국제우편물번호(Identifier): 국제우편물번호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과세대상 국제우편물(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사전통관정보
① 국제우편물번호(Item No, UPU standard S10) ② 국제우편물종류(Mail Class): EMS, 소포(Parcel Post), 통상우편(Letter Post) 등 ③ 물품구분(Category/nature of the item): 판매상품, 선물, 상품견본 등 * Gift, Documents, Commercial sample, Returned goods, Sales of Goods, Other ④ 발송인 성명 (Sender's full name) ⑤ 발송인 주소, 우편번호(Sender's postal address) ⑥ 발송인 연락처(Sender's telephone, e-mail, fax):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 ⑦ 수취인 성명(Recipient full name) ⑧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Recipient postal address) ⑨ 수취인 연락처(Importer's telephone, e-mail, fax):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등 ⑩ 국제우편물중량(Total item weight in kg) ⑪ 우편요금(Postal charges) ⑫ 물품설명(Description, quantity and unit of measure): 품명, 규격, 수량 등 ⑬ 물품가격 및 통화단위(Value and currency) ⑭ 물품중량(Net weight in kg) ⑮ HS 6단위 부호(HS tariff number - six digits):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번호 ⑯ 원산지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 ⑮~⑯: 상업용 물품(상품, 해외직구 물품 등)이 아닌 경우 생략 가능

<표 III-12> 국제우편물 사전발송정보

서신을 제외한 모든 국제우편물의 사전발송정보
① 발송번호(Despatch-ID, UPU standard S8) ② 마감일시(despatch closed date time) ③ 우편자루 번호(Receptacle-ID, UPU standard S9) ④ 우편자루 일련번호(Receptacle-ID serial) ⑤ 국제우편물번호(Identified item, UPU standard S10) ⑥ 발송예정일시(Departure form origin) ⑦ 도착예정일시(Arrival at destination) ⑧ 발송국 공항 또는 항만(Origin Airport) ⑨ 운송수단(Planned Flight) ⑩ 도착국 공항 또는 항만(Destination Airport) ⑪ 국제우편물중량(Receptacle weight)

○ 세관장은 제출된 사전전자정보를 통해 다양한 업무에 활용함

- 국제우편물의 검사(검사대상 국제우편물 선별업무 포함)
- 과세여부 및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
- 그 밖에 국제우편물 통관 및 감시와 단속 업무

□ 결론적으로, 소액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시 제공된 불명확한 상품 정보 제공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사전정보제공 여부와 정보 범위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함

3.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

-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은 별도의 인증없이 수입되고 있어 다양한 안전성과 국내 생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확대
-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국내 유통에 필요한 요건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고 있음
 -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제품, 사고 위험과 건강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이 안전 규제 없이 반입되고 있음⁵⁵⁾
 - 피부 및 신체 접촉이 빈번한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도 안전 검사 없이 국내 반입되고 있음
 -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도 불법 반입이 급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⁵⁶⁾
- 이로 인해 국내 생산자와 유통업자와의 역차별 외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 실제 관세청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수입된 어린이제품 252종의 성분 분석결과 약 15%인 38종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의 최대 3,036배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됨
 - 2024년 4월에 인천세관에서 실시한 중국산 전자상거래 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가 판매한 장신구 404개 중 24%인 96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었음

55) 해외직구 구매대행 시 어린이용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은 KC 인증 없이는 반입이 차단되나, 해외플랫폼을 통한 개인의 직접 구매는 가능함

56)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건) : ('21) 678 → ('22) 849 → ('23) 6,958

-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 총 7차례의 안전성 검사 결과 전체 조사 품목의 43%에 달하는 40개 제품에서 최대 428배의 유해물질 검출됨
- 한편 정식 수입물품과 수입된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관세청에서 '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됨
- 국내 제조업과 수입업자를 포함하는 유통업에서 역차별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인증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함
 - 수입의 경우에도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이 아닌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등 안전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 이러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소요됨
 - 따라서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인증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국내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비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짐
-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미흡
 - 현재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경우 자가소비용일 때는 1개에 대해서

는 예외적으로 인증요건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 수입되고 있음⁵⁷⁾

- 상술한 국내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들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음
 - 따라서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또는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전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결론적으로,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기 위한 요건확인이 면제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물품의 국내 판매에 필요한 인증 없이 수입되어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5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16의 5에 의해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 제외)은 안정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이 면제됨

4. 전자상거래물품의 면세범위 적정성 문제

☐ 소액면세제도 운영의 의의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과세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 등의 면세와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 과세 현황(제2장 <표 II-7> 전자상거래물품 과세통관 현황 참고)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건수기준)은 면세통관 비중이 98%, 과세통관 비중이 2%로 대부분 소액물품이 반입되고 있음
 - 금액기준으로는 면세통관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건수기준으로 면세통관 비중이 95%, 금액기준으로 면세통관 비중이 73%임

☐ 소액면세제도의 재검토 필요

-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소액면세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승하여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입 급증은 관세행정의 관리비용의 증가를 야기하여 소액면세제도를 통한 관세행정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관세와 부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해 주었으나, 최근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국경간 전자상거래 확산으로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과 소액 면세를 활용한 다양한 불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수입된 전자상거래물품과 국내 제조 및 유통업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발생, 저가신고를 위한 의도적인 분할 수입을 통한 탈세 문제,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면세물품을 수입 후 재판매하는 문제 등임

-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 한도는 OECD 대부분 회원국이 미화 50달러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미화 100달러 이상을 면세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미화 100달러), 한국(미화 150달러) 밖에 없음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는 미화 679달러과 미화 272달러로 높았지만, 2019년 이후 세법 개정을 통해 소액면세를 폐지하였으며, 예외적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2016년 미화 2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조정한 국가도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범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누적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극단적으로는 1년 동안 1명이 54,750달러의 상당의 물품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당 면세범위와 연간 누적면세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별 적용도 검토 필요(중국의 경우 1회 5,000위안, 1년 26,000위안 이내의 경우 관세 면제와 증치세와 소비재 각각 30% 감면)
- 미국의 경우에도 면세범위 확대 이후 최근 중국산 수입물품으로 증가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⁵⁸⁾, 미국은 2016년 소액면세 기준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하였으며, 확대 이후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 규모가 2억 200만 달러에서 2021년 1조 115억 달러로 증가함
 - 이 중 중국산 제품 비중이 60% 정도로 2022년 미화 800달러 미만 제품 해외 직구 구매액은 6억 8,500만 달러 정도이며, 매년 급성장 중인 중국산 제품으로 인해 De Minimis 제도가 쟁점으로 부상중임
-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물품의 급증으로 인해 소액면세제도의 본래의 취지인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동 제도의 악용 사례가 늘어 추가적인 관세행정력이 소모되며, 특히 세계적으로 소액면세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 추세임

58) TIN뉴스(2023), 美의회, 중국산 제품 '직구 규제'.

제Ⅳ장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세사의 역할 확대방안

제1절 관세행정의 개선방안

제2절 관세사의 역할 확대방안

제Ⅳ장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세사의 역할 확대방안

제1절 관세행정의 개선방안

1.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특별통관 방법의 일치성 제고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제7조의 일치 필요

○ 전자상거래물품으로서 운송주체가 다른 것이지 물품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제7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판단됨

- 국제우편물의 경우 관세법 제94조⁵⁹⁾에 해당하는 국제우편물 또는 관세법 제40조의 국제우편물(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수입신고 생략하고 면세통관됨

- 특히 관세법 제94조 4호의 소액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1호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고시 제4조와 제7조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특송업체를 사용했는지 우체국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차이만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제7조의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제4조와 같이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59)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건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국제우편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고시 제10조제2항에서 국제우편물 통관과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였기 때문에 동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임
- 전자상거래물품이 자가사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동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통관의 일원화 필요

○ 동일한 전자상거래물품이라 하더라도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대상 범위와 통관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도 역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단순히 운송주체의 상이함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명확성을 위해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간이통관대상 범위의 상이

- 특송물품의 경우 150달러(미국 수입은 200달러) 초과하고 2,000달러이지만, 국제우편물의 경우 1,000달러 이하로 적용하고 있음

○ 간이통관 방법의 상이

- 특송물품은 간이신고를 통한 수입통관 시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 또는 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를 함
- 국제우편물은 수입신고는 생략되지만,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단, 세관신고서, 국제우편물목록 등을 통해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이 명확한 물품의 경우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지 받아 통관할 수 있음

○ 따라서 국제우편물의 경우 간이통관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특송물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의 고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미국(2,500달러 이하)과 일본(20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소액기준을 우편 또는 특송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만엔 이하 소액물품은 운송주체에 관계없이 간이통관과 간이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간이세율 적용 규정 일치 필요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과 현장과세통관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와 제9조에 의해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경우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지 받아 통관할 수 있음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의하면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및 현장과세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법 제81조 제1항 제호에 따른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특송물품 간이통관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라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뿐, 간이신고 이후 부과지 내용과 간이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도 없음

○ 따라서 국제우편물과 동일하게 특송물품 간이통관과 관련해서도 부과지 내용과 간이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시 제출정보의 확대와 정확성 제고

□ 통관목록 정보의 부실화 개선 필요

- 중국발 전자상거래 중 간단한 품명만으로 신고하는 목록통관의 비율이 절대적이며(약 98%로 예상) 브랜드 및 모델명(규격)등의 물품 상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가짜상품 및 불법상품에 대한 사전 Screen이 불가능하며, 목록통관시 기재하고 있는 HS Code 6단위를 특송사가 임의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모든 법령을 회피하고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수입 및 관세포탈의 경로가 되고 있는 목록통관대상을 최소화하고 필수 기재사항(정확한 상품명, 상품코드, 가격 등)을 확대하도록 고시 개정과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목록통관을 불허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소액면세물품에 있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정보제공 범위 일치 필요

- 특송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통관목록 작성을 위해서는 표지 제1호서 식인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 양식과 같이 총 32종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국제우편물의 경우에는 8종의 정보만 제공됨 되고 있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 정보제공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큼
- 따라서 동일한 물품의 수입이라는 점과 위해물품의 선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송물품의 기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시 사전정보제공의 의무화 필요

- 국제우편물 통관규정을 준용하여 특송물품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시 사전정보제공을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정보제공 시기로는 국제우편물과 같이 ‘출항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 전’ 또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와 같이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제출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며, 대상은 통관우체국장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특송업자 등 전자상거래 공급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범위 확대 필요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성과 위해 및 위법물품의 선별작업을 위한 필수 정보들의 확보가 필요함

- 전자상거래는 제조사, 거래 중개를 하는 플랫폼 운영자, 소비자로 구성되어, 소비자는 플랫폼에서의 상품페이지를 보고 거래 체결을 하고, 실제 물품은 제조사가 보내기 때문에 거래물품과 운송물품이 상이할 수 있음

○ 따라서 위해 및 위법물품 선별을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정보와 실제 물품의 운송정보를 통합하여 검증하여야 선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정보를 선정하여 제출 서식에 포함시켜야 함

○ 이러한 전제에 가장 부합하는 제출정보의 범위는 현행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르면,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⁶⁰⁾, 특히 주문번호, 주문 사이트 인터넷 주소, 인터넷 게시 상품명, 주문단계에서의 총 상품금액 등의 거래정보 등은 매우 유용한 정보라 할 수 있음

60)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인 감시·단속과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요청 가능함

<표 IV-1> 요청 가능한 거래정보⁶¹⁾

연번	항목	조건	설 명
1	운송장 번호	필수	○ 배송의뢰 시 생성되는 운송장 번호(H-B/L번호)
2	주문번호	필수	○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고유 주문번호
3	주문 사이트 운영 업체	필수	○ 관세청에서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4	주문 사이트 인터넷 주소	필수	○ 주문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URL)
5	판매업체	필수	○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 또는 상호명(전자상거래업체 고유부호가 없는 경우)
6	구매일시	필수	○ 사이트에 주문이 완료된 일시(예: 20220101010101)
7	구매자명	필수	○ 사이트에서 주문·결제한 자의 성명
8	수하인명	필수	○ 수하인명
9	수하인 전화번호	필수	○ 수하인의 휴대전화 번호
10	수하인 우편번호	필수	○ 수하인 주소의 우편번호
11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12	상 품 정 보	①인터넷 게시 상품명	필수 ○ 상품명
		②모델·규격	선택 ○ 상품의 모델명, 색상, 사이즈 등 상세규격 * 별도 구분하는 경우 기재
		③수량	필수 ○ 상품의 모델·규격별 수량
		④단가	필수 ○ 상품의 모델·규격별 단가(통화단위/금액)
		⑤금액	필수 ○ 상품의 모델·규격별 금액(통화단위/금액)
13	총 수량	필수	○ 상품의 총 수량 * 12-③의 합계
14	총 상품금액	필수	○ 주문단계에서의 총 상품금액(통화단위/금액) * 12-⑤의 합계
15	배송비	선택	○ 주문단계에서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배송비 (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6	통관대행료	선택	○ 주문단계에서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관부가세 등을 포함한 수입통관대행료(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7	기타 구분비용	선택	○ 배송비, 통관대행료를 제외한 주문단계에서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기타비용(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8	할인금액	선택	○ 주문단계에서 구매자가 적용받은 총 할인금액 (통화단위/금액) * 별도 구분하는 경우만 기재
19	최종 결제금액	필수	○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통화단위/금액) * 신고서 항목 '결제금액(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사이트에서의 최종 결제금액 ※ 총 상품금액+배송비+통관대행료+기타 구분비용-할인금액 = 최종 결제금액

61)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1

- 미국의 목록통관 방식 중 하나인 Entry Type 86에서 요구하는 정보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8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적하목록 방식인 Section 321 또는 ACE(전자통관시스템) 전자통관 방식인 Entry Type 86을 통해 목록통관을 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HS Code 6단위 제출인데 반해 Entry type 86의 경우 HS Code 10단위를 제출함으로써 품목 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요건확인물품의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소액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시 다음과 같은 제출 정보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문번호, 주문 사이트 인터넷 주소(상품페이지가 활성화된 주소), 인터넷 게시 상품명, 주문단계에서의 총 상품금액 등의 거래정보 등
 - HS Code 10단위

3.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요건 확대

- 앞의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소액 전자상거래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범정부 차원의 5.16.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해물품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KC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어린이제품 34개 품목

- 사고 우려가 큰 전기온수매트,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

○ 그러나 국내 전자상거래물품 소비자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아 사실상 철회된 상태임

- ‘해외직구 금지’가 아닌 ‘미인증물품에 대한 일반 수입통관 적용’이라는 보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했어야 함
-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KC인증만 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평가가 있으며, 특히 가습기 피해의 원인인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음
- 고물가 시기에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보다는 소비자의 소비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옴
- 현실적으로 2024년 1/4분기 하루 평균 46만건의 수입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 인증 여부 등을 건별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음
-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지 못하게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향에서 일단은 수입을 허용하고 사후에 관세청 및 환경부 등의 유해성 검사를 통해 차단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임
- 통관에서 위해 제품을 모두 적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해 제품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책임을 포괄적으로 물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미국의 목록통관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8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적하목록 방식인 Section 321 또는 ACE(전자통관시스템) 전자통관 방식인 Entry Type 86을 선택하여 목록통관을 하고 있음

○ 다만 다음의 수입요건확인 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됨

- FDA(식약청) 관리 품목 중 식품,약품,의료용품,화장품,사료용품,완구류 등

- USDA(농림부) 관리 품목 중 농축산물 등

- NOAA(대기해양청) 수산물 등

- CPSC(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관리 품목 중 완구, 유아용품, 라이터, 페인트, 자전거 등

- EPA(환경보호청) 관리 품목 중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 FCC(연방통신위) 관리 품목 중 휴대폰, 블루투스 제품 등 주파수 발생 품목 등

○ Section 321은 적하목록 통관방식으로 특송업체가 제출한 적하목록 등 서류에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서류만으로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임

- 적하목록이나 B/L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서류에 의한 통관 방식으로 제품의 원산지, 송하인 성명, 주소, 국적, 최종 수하인 성명과 주소, 제품의 상세 명세, 수량, 선적 중량, 가격 등이 제공될 수 있음

- 해당 방식은 CBP가 물품 정보는 확보가 가능하지만 판매자 등 세부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워 마약 등의 위해물품, 무기류 등 테러물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품 등에 대한 검사선별에 한계가 존재함

- Section 321을 통한 수입통관시 소액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FDA 등 다른 정부기관(PGAs)이 요구하는 수입요건확인 사항과 관세 및 기타 내국세 등 과세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 없음

○ Section 321 Data Pilot 시범사업 진행

- 특송물품 정보 관리를 위해 CBP는 전자상거래 기업과 특송업체로부터 주문, 결제, 물류정보를 세관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이를 위험분석과 선별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입요건확인 대상 물품이더라도 Entry Type 86과 동일하게 목록통관이 가능함
- 참여 운송인은 미국으로 향하는 선적 물품에 대해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인도 당사자 성명과 주소, 명세에 있어 적하목록 명세보다 상세한 물품 명세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포스팅된 제품의 소매 명세 등의 데이터 요소를 추가로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함
- 또한 운송인의 고객 정보 관련해서 운임의 지속적 지불과 무역위반을 하지 않은 반복 고객으로의 화주를 확인해 주는 지표요소를 제공해야 함
- 참여 전자상거래 기업은 매도인 성명과 주소, 가능한 경우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배송 당사자 성명과 주소, 플랫폼의 매도인 계정 번호와 매도인 ID, 가능한 경우 매수인 성명과 주소, 플랫폼에 포스팅된 제품 사진, 플랫폼 상에서 수입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활성 링크, 플랫폼 상의 제품 가격 등⁶²⁾의 데이터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함

○ Type 86 방식은 전자통관시스템(ACE)을 통한 전자방식으로만 통관 진행됨

62) 송선욱(2022),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 대상 물품은 운송수단의 구분에 관계없이 수입된 다른 정부관계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른 선적품을 포함한 Section 321에서의 저가 선적품임
- 소액면세물품의 구매자, 수입자 또는 대리인 자격의 관세사 등은 반입 전후 또는 15일 이내에 10개의 데이터 항목이 포함된 Entry Type 86 신고를 해야함
- 모든 소액면세 적용 물품에 대해 HS Code 10단위 등의 정보를 요구하여 CBP와 정부관계기관(PGAs)에게 가시성을 높여주고 있음
- 유관기관의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 Single Window상의 문서이미지시스템(DIS)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첨부파일을 전자적으로 전송 및 회신함

<그림 IV-1> Entry Type 86 통관 절차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제도 비교연구.

- 적하목록 통관방식에 비해 소요시간이 줄고 데이터 형식의 신고내역 확보가 가능하여 우범화물 선별 등에 활용함으로써 위험관리 시스템 고도화가 가능함
- 실제 면세한도가 2016년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나면서 소액면세 통관이 증가하면서 전자통관 방식인 Type 86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표 IV-2> Entry Type 86 적용 시 통관유형별 대표 기재사항 비교

구분	대상	기재사항
일반 목록통관	국제우편물, 샘플, 서류 등	일반 품명, HS 6단위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면세물품 중 일반상품	상품명, 상품코드, HS 6단위
요건대상 목록통관	면세물품 중 요건대상	HS 10단위 및 인증 관련 정보

□ 우리나라의 목록통관 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목록 작성을 위해 총 32종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음

- 특송업체명, 선박편명(항공편명), 적출국(항), 입항일자, 거래코드, 용도 구분, 물품발송인 성명·주소·전화번호, 물품수신인 성명·주소·전화번호·우편번호·식별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Master B/L №, House B/L №, 규격, 품명, 포장갯수, 중량, 발송국, 수량, 물품가격 (US\$), HS Code 6단위

○ 해당 통관목록을 제출하면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별도의 인증 관련 요건 확인이 면제가 됨

- 다만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 경우 일반 수입통관을 적용받기 때문에 요건확인절차가 필요함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 주류, 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다만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를 통해 사이버몰을 통해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철저한 적용, 전자상거래 공급망의 의무 강화,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수입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물품 차단은 반드시 필요한 관세행정 사안임

- 현실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5.16 대책에서의 해외직구 금지라는 방향성은 소비자의 반발과 실행의 비현실성, 그리고 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큼

○ 따라서 해외직구 금지를 통한 유입 차단 보다는 현재와 같은 수입을 보장하면서 통관 단계에서 현 제도의 보완과 보다 적극적 활용, 전자상거래 공급망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전자상거래물품의 국가간 상호인증 도입, 그리고 사후적인 모니터링 강화와 적발 물품의 수입차단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대안일 것으로 보임

□ 현행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관련 제도의 적용 강화 및 확대 필요

○ 현재 운영 중인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에 대한 적용 강화와 대상 물품의 확대를 고려해 할 필요가 있음

○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에 대한 적용 강화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한 적용을 강화하여 해당 항목에 적용될 여지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수입통관으로 전환시켜야 함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의 대상 확대

- 수입된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보된 위해물품 적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완구류와 유아용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하여 적하목록 통관 방식인 Section 321을 통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완구류와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지정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허용을 위한 다양한 인증기준 도입 필요

○ 최근 발표한 인증기준 관련 정부 대책의 보완을 위해 활용가능한 다양한 인증 기준 관련 논의가 필요함

-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5.16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에 논란이 있었던 물품에 대해 KC 인증을 획득한 물품에 대해서만 목록통관을 적용하겠다는 것임

- 즉 150\$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가능 물품에서 KC 인증이 없는 물품은 제외하겠다는 의미이며, 일반 수입통관에서도 요건확인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KC 인증이 없는 물품은 해외직구로 수입이 금지된다는 의미임
- 5.16 정부 대책과 같이 KC 인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국가마다 인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K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하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소액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간 및 비용 소요에 대한 부담이 큼
 - 궁극적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을 하고, 그 외 물품에 있어서는 최소한 수출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 수입을 허용해야 할 것임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에 있어 인증기준을 제시한 목적이 국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인증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내 판매 시 필수적인 KC 인증과 유사한 수출국의 인증을 획득할 경우 허용
 - 수출국 국내에서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허용
 -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CE 인증 등)이 있을 경우 허용
- 또한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주요 교역국과의 인증 기준에 대한 상호인정 확대도 고려할 수 있음
 - 관세법 제240조의5에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를 규정하고 있어 통관절차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간

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

- 2017년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확대협약⁶³⁾이 체결되어 중국강제 인증(CCC)과 한국의 KC 인증에 대해 상호인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자상거래 공급망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필요

○ 전자상거래 공급망에서 확보한 정보 중 위해물품 선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공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충분한 관세 행정력을 투입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을 관세행정시스템상에서 위해물품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거래정보, 특송업체를 통한 운송정보, 관세사를 통한 통관 적격성 정보 등에 대해 제공 의무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필요한 경우 ‘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사이버몰의 거래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⁶⁴⁾
- 현재 미국은 Section 321 Data Pilot 시범사업과 Entry Type 86을 통해 거래정보 및 운송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거래(주문), 지불(결제), 물류(운송) 정보를 제공받아 일치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 가능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63) 상호인정협약체결기관은 KTL(산업기술시험원),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한국기관, 중국측은 CQC(중국품질인증센터) 1개기관임

64) 현재는 통관우대업체 신청 시 제12조의 거래정보를 제공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통관우대업체가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스마트통관을 활용하여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표 IV-3> 우리나라와 미국의 목록통관 시 정보 제공 범위 비교

	정보 제공 범위	요건확인 유무
Section 321	제품의 원산지, 송하인 성명, 주소, 국적, 최종 수하인 성명과 주소, 제품의 상세 명세, 수량, 선적 중량, 가격 등	있음
Section 321 Data Pilot 시범사업	- 운송인 : 미국으로 향하는 선적 물품에 대해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인도 당사자 성명과 주소, 명세에 있어 적하목록 명세보다 상세한 물품 명세를 제공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포스팅된 제품의 소매 명세 등 - 전자상거래 기업 : 매도인 성명과 주소, 가능한 경우 선적품 최초 개시자 성명과 주소, 최종 배송 당사자 성명과 주소, 플랫폼의 매도인 계정 번호와 매도인 ID, 가능한 경우 매수인 성명과 주소, 플랫폼에 포스팅된 제품 사진, 플랫폼 상에서 수입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활성 링크, 플랫폼 상의 제품 가격 등	없음
Entry Type 86	원산지, 송하인과 수하인 이름, 주소, 국가 정보, 수량, 수출신고금액, HS code 10단위, 운송서류 번호(B/L 또는 AWB), 통관서류번호, 미국 세관 항만 코드, 요건확인물품 신고자 IOR 번호 요건확인물품 PSG 데이터 세트	없음
특송물품 목록통관	특송업체명, 선박편명(항공편명, 적출국(항), 입항일자, 거래코드, 용도구분, 물품발송인 성명·주소·전화번호, 물품수신인 성명·주소·전화번호·우편번호·식별부호, 화물운송주선업자부호, Master B/L №, House B/L №, 규격, 품명, 포장갯수, 중량, 발송국, 수량, 물품가격 (US\$), HS Code 6단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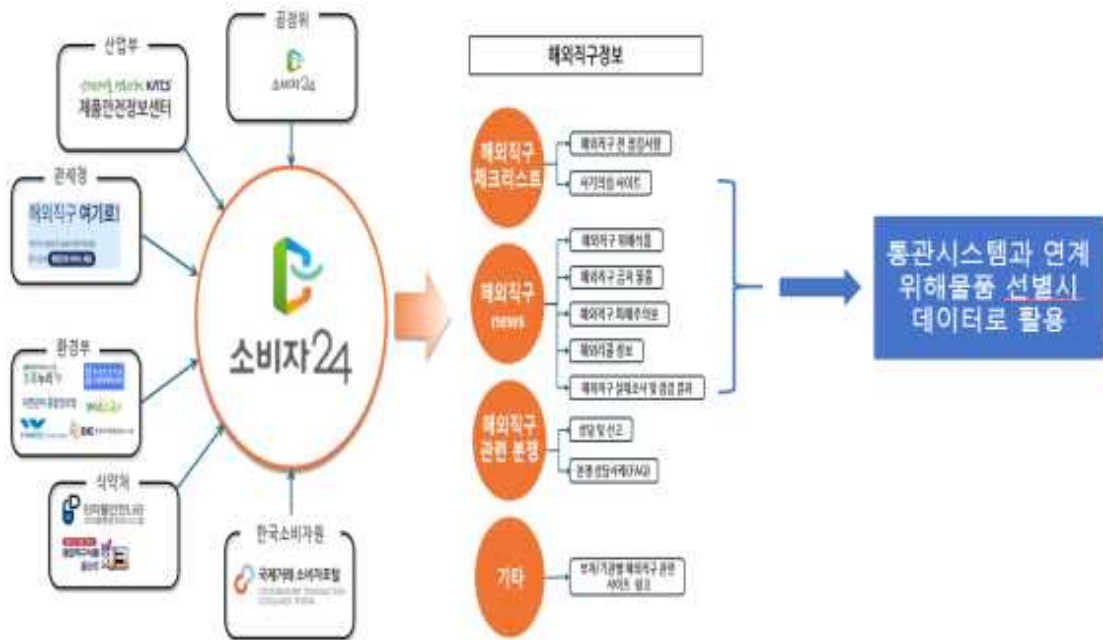
□ 사후 모니터링 강화와 적발 물품 차단을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통관을 통해 위해물품에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입 후 사후적 대응방안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기준의 적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통관 과정에서 모든 위해물품의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통관 이후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시점에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물품 적발과 관세청을 통한 수입 차단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허청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중 가품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하여 적발 시 국내 반입 차단 필요
- 식약처와 연계하여 사용금지 원료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의약외품 위해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 차단 필요
- 환경부 및 산업부와 연계하여 석면 함유제품, 생활화학제품(방향제·탈취제 등 32개 품목), 장신구 등은 모니터링⁶⁵⁾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 필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정부가 구축하기로 한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소비자 24)과의 연계를 통해 타 기관의 정보(사후 모니터링 결과 포함)들이 통관 시 위해물품 선정 작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차단을 위해 각 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여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스마트 통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65) 환경부는 '24.5~11월 매월 100개 직접 구매 후 위해성분 조사·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24년 말 까지 접촉성 장신구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그림 IV-2> 사후 모니터링과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체계



자료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024),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정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소액면세제도의 개선

□ 소액면세에 있어 관세와 내국세의 분리 과세 필요

-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최저 면세점인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소액면세한도 이내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세가 이루어짐
- 수입된 전자상거래물품은 관·부가세 면제로 국내 일반 제조·수입업체 물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가져,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이 있음
-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소액면세 시 관세와 내국세(부가세와 소비세)를 분리하여 내국세인 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ECD 가입 국가 기준으로 볼 때 개인직구 면세기준이 평균 50달러 정

도이고, 유럽권 국가의 경우 면세기준이 아예 없는 국가도 있음

- EU, 호주, 뉴질랜드 등은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현재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음
- EU('21.7), 영국('21.12), 호주('18.7월), 뉴질랜드('19.12월) 등도 부가세 면세를 폐지하였음
- 다만 EU의 경우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관세가 면세되고('28년부터 관세 면세 폐지 예정), 부가세는 45유로 이하의 선물용 물품의 경우만 부가세 면제됨

□ 소액면세범위 한도 재조정 필요

○ 소액면세범위를 월 또는 년 단위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될 만큼의 면세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소액면세 최저한도는 150\$로 정해져 있지만, 월 또는 년 단위 총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1인이 1년 동안 최대 약 7400만원의 물품을 세금 없이 수입할 수 있음

- 1일 150\$ X 365일 X 1350원(환율) = 73,912,500원

- 소액의 자가소비용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음

○ 세액 1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규정한 관세법 제40조의 소액 물품면세기준 등을 고려할 때, 소액면세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생산기반과 유통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해외직구면세범위를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 면세범위에 맞게 조정하여야 함.

- OECD 국가들의 면세 한도금액이 평균 미화 50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화 50달러 수준의 면세한도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
- 다만, 1회 소액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회 소액면세한도는 유지하고 대신 1년 총액 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부가세 부과 및 해외직구 한도 설정(1회 5000위안, 연간 26,000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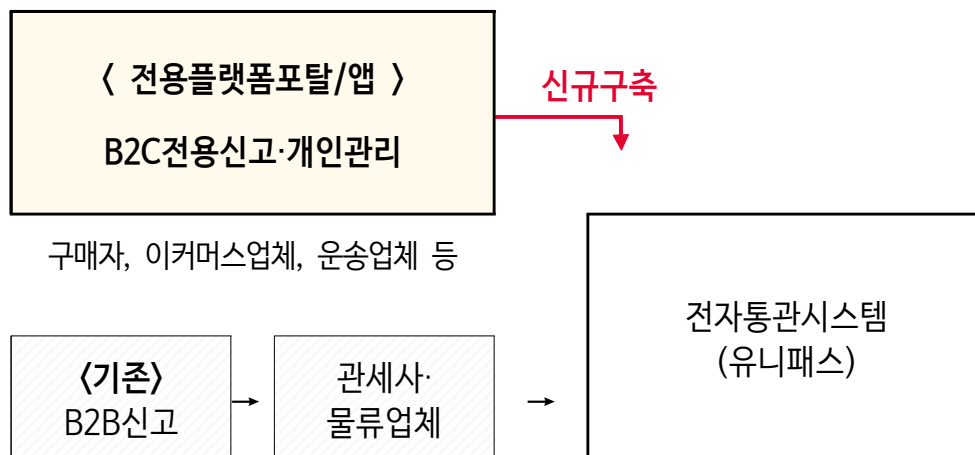
5. 통관 위험관리체계 구축

□ 통관 위험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필요

-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항전 사전에 획득하여 데이터화 함으로써 우범 및 위해물품에 대한 C/S 정확도 제고를 도모해야 함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과 이를 통관해야 하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공급망들을 통해 통관에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기반으로 우범 및 위해물품을 사전에 선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선별작업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 선별작업을 통해 가능성이 낮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 진행
-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선별작업 극대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공급망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관에 필수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공급망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플랫폼 구축과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과의 연계가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관세청은 2024년 1월에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원활한 정보 전송 시스템이 포함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음
- 20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함임
-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IV-3>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설계도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2024),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 전자상거래 공급망으로부터 필수 정보의 효과적 확보 방안 필요

○ 전자상거래 공급망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을 원활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과 자율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 제도적 측면은 상술한 했던 바와 같이 관련 법령과 고시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의무와 제공할 정보의 범위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임
- 자율적 측면은 전자상거래 공급망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임
- 필수 정보를 제공한 전자상거래물품은 스마트통관 등 신속통관의 혜택을 확대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물품의 통관에 있어서는 C/S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업체의 정보 제공 확대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통관우대를 적용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업체가 전자상거래업체 고유번호와 동 고시 제12조의 거래정보를 전송할 경우 통관우대업체로 신청할 수 있음
- 통관우대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스마트통관을 적용할 수 있음
- 스마트통관이란 수입신고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전자적 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심사 처리되어 신속통관이 가능한 통관절차상 혜택임
- 통관우대업체와 통관우대물품에 대한 지정요건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확대와 비통관우대업체에 대한 심사 비율 확대 등의 패널티에 대한 규정화 필요

○ 특송업체의 정보 제공 확대

- 특송화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서는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6항의 경우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불명확한 품명 기입 등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센티브 : 동 고시 제22조를 통해 특송업체별 평가결과를 통해 검사비용 차등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평가항목에는 제21조 특송업체의 의무 이행사항과 특송물품의 신고 정확도 등이 반영되고 있음
- 패널티 : 동 고시 제29조에서 세관과의 협력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할 수 있음

□ AI 통관위험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AI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 자체 위험과 수입물품 위험도를 통합한 통합위험도를 통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전자상거래 이해당사자들의 법규준수도와 내부통제수준에 따른 인적위험도와 거래품목에 따른 물품위험도를 고려한 통합위험도를 산출하여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 필요

○ 생산자, 판매자, 특송사, 신고인, 구매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수준에 따른 인적위험도 관리

- 생산자 이력, 플랫폼(판매자)의 관세행정협력도 및 자정시스템 등 내부통제 Process평가, 특송사 및 신고인의 성실도, 구매자의 관련 법위반 이력 및 품목별 구매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검사비율 조정 필요함
-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목록통관배제, 검사비율 상향조정, 전수 검사, 사

이트 판매금지 조치 등 점점 징계수위를 올리는 식으로 관리

-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가품 가능성이 높은 품목, 저가신고의 우려가 있는 품목 등에 대한 물품위험도 관리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품목, 가품 등의 지적재산권 위반이 수시로 발생하는 품목, Under Value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HS Code 및 상품명 기준으로 분류하고 본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높일 필요 있음
 - 위반사항 발생시 해당 생산자 및 판매자의 목록통관배제, 검사비율 상향조정, 전수검사, 사이트 판매금지 조치 등의 징계수위를 올린다면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목록통관 접수시 생산자 및 수출자의 이력 확인, 제품 Code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물품과의 일치 여부, 가격 일치 여부, 해당 제품의 위험도를 AI가 확인하여 위험도를 경보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법규위반이력이 있는 생산자 및 플랫폼이 안전 위해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집중 관리하고 관세행정협력도가 높고 내부자정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보장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통관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관세사의 역할 확대방안

1. 전자상거래물품의 관세행정에서 관세사의 역할과 입지 강화

- 관세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관세법과 규정을 해석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세행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고 있음
- 관세사는 관세청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여 관세행정이 최선의 방법으로 운영되도록 협력하고 있음
- 관세사는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보조하여 관세행정에 협조하는 공공업무를 수행함
- 관세사법 제1조에서 관세사법의 목적은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밝혀 관세사를 활용한 관세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관세사의 사명으로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규정하여 관세사에게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세관의 행정인력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통관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관세행정의 원활화에 협력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과 관세행정 인력의 공급 부족과 인프라 부족으로 원활한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이 어려운 실정임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세관 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와 통관 검사품질 저하 우려 및 물류 지체 발생하고 있음
- 통관직원 1인당 처리 건수는 41.7만건으로 전년대비 31%↑, x-ray 판독 시간은 건당 1~5초

- 해외직구 성수기 : (항공특송) 1~2일 → 3일 이상 소요, (해상특송) 2~3일 → 4일 이상 소요
- 관세청도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5.16 정부 대책에서 통관검사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을 제시했음
- 관세청 내 해외직구 담당 직원은 2018년 216명에서 2022년 331명으로 약 1.5배 증가함
- 이는 2022년 기준으로 관세청 해외직구 담당 직원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시간당 약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치임

<표 IV-4> 해외직구 과세통관 건수 대비 인력 현황 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146명	206	215	217	217
	항안통관검사 5과	26명	42	46	49	52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13(3)명	14(-)	17(-)	19(3)	17(1)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31(9)명	43(20)	59(20)	30	27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11(7)	16(7)	16(5)	16(5)
소 계		216명	316명	353명	331명	329명
해외직구 건수		42,988	63,575	88,380	96,120	-
1인당 건수		199,018개	201,187개	250,368개	290,393개	-

자료 : 관세청 국감 제출자료(2023). 2018~22년 국가별 해외직구 및 담당 인력 현황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에서의 관세행정 역량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관세사의 입지를 굳힐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관세사가 반드시 관련 서류의 제출과 신고를 담당해야 함
- 관세행정 인력과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통관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 관세사의 보다 정확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특송업체의 통관 업무를 수주해 관세사 업무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송업체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음
-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와 특송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와 특송업체와의 협상력 제고가 절실함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과정에서의 관세사의 준법의지를 제고시킴으로써 특송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협상력이 향상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관세청은 관세사와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업무 관련 법 준수 향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교육 이후 일정 계도기간을 제시하고 관세사 담당 업무 관련 특별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관세사와 특송업체의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 시 강한 제재가 필요함
- 이러한 관세청의 활동은 관세사에게 있어 특송업체에게 적법한 업무 활동을 주장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한국관세사회 역할 강화 필요
- 한국관세사회를 중심으로 특송업체의 부당한 지시 사례 등을 수집하여 관세청과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음
- 개별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의 협상력은 낮기 때문에 한국관세사회가 특송업체 협의체와의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관세사 업계의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을 협의해서 상생방안을 도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관세사의 전통적인 업무영역이라 할 수 있는 통관업무 관련 서비스 제공은 법정 보수료 제도의 폐지와 포워더들의 통관취급법인을 통한 통관업무 합류로 수익성이 매우 악화

2.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에 있어 적정보수로 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에 있어 관세사의 낮은 보수료 수입

- 관세사업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고객확보를 위한 저가 수주 경쟁으로 통관 보수료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실무적으로 특송화물의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경우 건당 200원 이하에 수입하는 관세법인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세사 적정보수로 체계를 설계하여 이를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활용하여 화주 및 특송업체와 보수료 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보수요율 사례와 표준운임제의 표준위탁운임 등을 참고하여 적정보수요율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합리적인 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변호사, 세무사 등의 법적 보수요율은 폐지되었으나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요율은 유지되고 있음
- 낮은 운임 협상력으로 인해 실제 운임이 낮은 화물운송인(차주)의 적정 운임보장을 위해 2020년 2년의 일몰기간을 전제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3년의 일몰기간을 전제로 표준운임제로 명칭을 바꿔 시행하고 있음

□ 적정보수로 체계 부재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일괄정비법」을 도입하면서, 1999년 2월 관세사법 개정으로 인해 제11조 보수규정에서 보수기준의 승인 또는 인가제도가 삭제된 후 현재까지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관세사 보수가 결정되고 있음
- 관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주요 10개 전문자격

사의 법적 보수요율이 폐지되었으며,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는 예외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보수요율이 존재함

- 관세사의 법적 보수요율의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관세사 수입 감소와 더불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수수료 전면 자율화 시행에 따라 관세사업계는 업무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덤핑으로 인한 저가수입, 리베이트 제공, 화주의 통관 업무비딩 등으로 수입이 급감함

- 실제 관세사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000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00년 대비 2009년 80%, 2016년 82.6%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화주와의 계약을 통한 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화주의 협상력이 우월하기 때문에 화주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짐

- 현재 통관 최저보수료와 환급신청 대행보수료는 최저가 입찰로 실경비에도 못 미치는 저가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형화주의 통관 업무 일괄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 관세사간의 저가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협상력의 결여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대리발급, FTA 컨설팅이나 원산지 검증조사 같은 직무의 무상 제공을 추가서비스로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함

□ 법적 수수료 기준의 부재로 인해 관세사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해 업무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입의 발생과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직업윤리 위반 행위가 증가하는 실정임

○ 실제 대형 관세법인과 경쟁이 어려운 중소 관세사사무소는 경영난 악화가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과다 수입경쟁으로 인해 실비 이하의 보수

료 덤핑 입찰로 공정시장 질서의 붕괴가 우려되는 수준임

○ 또한 저가 수주와 영리추구행위의 심화로 관세사의 서비스 질을 하락시켜 의뢰인의 불만 발생으로 관세행정의 신뢰성이 저해되고 또한 관세사의 관세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음

- 인건비 지출 축소를 위한 인력 감소가 발생하면 관세사법에 의한 성실의무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당연한 현상임

□ 적정보수료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함

○ 관세사의 보수에 대한 화주와 관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성의 확보와 건전한 수입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보수요율에 대한 체계적 제도화가 필요함

○ 관세사의 사회적 역할을 단순히 관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시장경제 논리로 설명하기에는 관세사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공공적 성격을 고려해야 함

○ 관세사의 적정 보수 수준은 관세사 직무의 정확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를 통한 오류 방지, 화주 요청에 따른 다양한 신고 및 신청과 자문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행을 통해 고객인 화주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인과 전문자격사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보수 수준이 제공되어야 함

○ 관세법, 환특법, 대외무역법, FTA 특례법,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60여개 개별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 160여 가지 고시, 통관절차진행과 관련해 화주들이 제공하는 정보로 작성하는 총 300여개의 민원행정문서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통관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자격사에 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건비와 관리비 지출이 많은 점도 고려해야 함

- 한국관세사회를 중심으로 한 적정 보수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은 단기와 중단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단기기적으로 관세사의 적정 보수료 체계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의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세사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함
 - 적정 보수료 체계 도입에 대한 당위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관세사법 개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또한 제시된 보수기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사회 차원에서 회원관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입 보수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통계 처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보수료 수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리고 관세사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공시함으로써 보수료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보수요율 사례와 표준운임제의 표준위탁운임 등을 참고하여 관세사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통해 관세사회의 회칙으로 구체적 보수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관세사법 제11조(보수) 제1항을 통해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관련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또는 규칙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실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구체적으로 한국관세사회가 중심이 되어 실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 세부적인 거래유형별로 실비(관세사의 리스크 부담비용 등 포함)를 계산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관세사가 의뢰인(화주)과의 협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이상과 같은 단기 및 중단기적 방안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도출해야 함
- 또한 제시된 보수기준을 위반한 관세사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

3. RPA 도입을 통한 관세사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 디지털 기술의 적용을 통해 신속·정확한 통관업무와 비용 절감 가능
 - 디지털 기술의 통합적인 적용은 신속 정확한 통관 업무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관세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실제 다수의 통관 관련 기업들에서 확보된 통관 관련 Big Data에 대해 AI를 활용하여 통관 업무에 적용하는 사례와 규칙적인 통관업무에 대해 RPA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사례 등이 제안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도입 비용이 저렴하면서, 표준화 상태가 우수한 적하목록 정보를 활용해 작성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 과정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RPA 도입을 제안함
 - 현재 대형 관세법인이나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RPA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소형 관세법인 또는 개인 관세사사무소의 경우 비용과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도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도입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국관세사회는 소형 관세법인 또는 개인 관세사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 RPA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관세청의 경우에도 관세사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은 관세행정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관세사 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RPA 도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플랫폼 구축사업과 병행하여 플랫폼을 통해 확보된 거래정보와 운송정보를 관세사가 통관목록 등 통관정보로 전환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한다는 점에서 관세사의 RPA 도입은 관련 업무의 효율화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짐

<참고>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개념

-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표준화 되어있고 규칙에 기반한 업무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기술임
 - 예를 들어 이메일 첨부파일 열기, 온라인 양식 작성, 데이터 입력 및 재입력 등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어 다른 업무들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소프트웨어임
- 사용자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또는 웹사이트에서 특정 내용을 인지하고, 입력장치를 통해 동작(Click, Drag & Drop 등)하고 데이터를 어디에 입력하는 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기술임

□ RPA 도입 시 기대효과(KPMG International(2016) 참고)

- 안정성 제고와 정확성 증대
 -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지와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보의 인적 오류를 예방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인력 없이 정보 보호 및 거버넌스를 수행할 수 있음
 - 입력 자동화를 통해 오류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데이터 무결성의 일반화와 재작업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업무 처리 규정을 100% 준수할 수 있음
- 효율성 극대화와 신속성 강화
 -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시성과 지속적인 개선물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저부가가치 업무를 자동화로 대체함으로써 소요 인력을 고부가가치 업무 및 차별적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재배치가 가능하고, 퇴사율과 관련된 비용 및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연중 무휴로 작업 수행이 가능하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서는 컴퓨터가 보다 높은 숙련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작업 대비 2~5배의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보다 빠르게 업무 처리할 수 있음

□ RPA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

○ 노동력 부족의 대안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및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 중임
- 인적자원을 보다 고부가가치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위험하고 사람이 기피하는 일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재배치

- 유연근로가 가능해지고 초과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음
-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자동화를 진행함에 따라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RPA 도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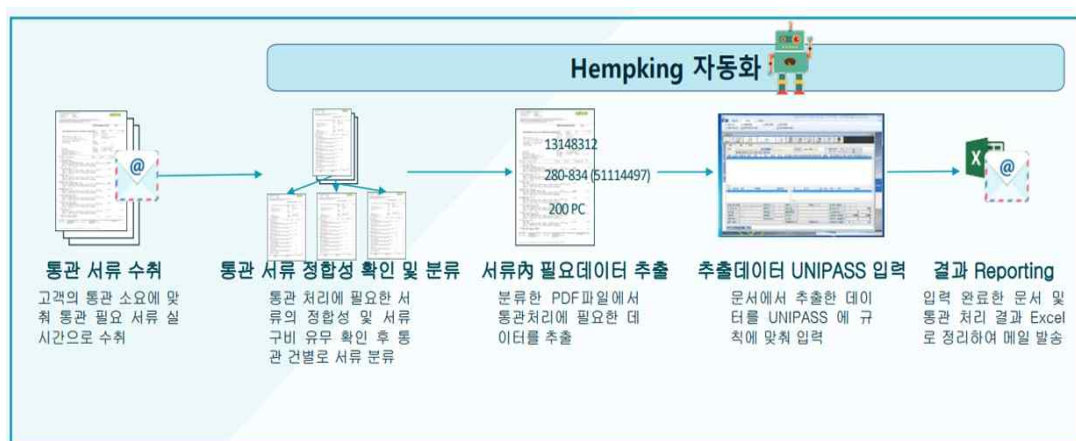
□ 관세사업계 RPA 활용 사례

○ 관세 및 통관업무에서 RPA 적합 업무

- RPA 적합 업무영역으로는 규칙성을 가지면서 반복적 업무, 정형화된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무, 업무 절차가 정의되어 있으면서 표준화된 업무, 고정된 시스템이나 특정 웹사이트를 통해 연결되는 업무, 수작업 시 오류가 많은 업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업무 등임
-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 작성 및 제출, 전자제출 업로드, 엑셀 자료의 PDF 변환, 인보이스 등 자료 입력, 메일 관리 등임

○ S 관세법인 RPA 도입 사례

- 수입통관 업무 절차 중 고객사로 받은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통관 서류의 정합성을 확인 후 통관 건별로 서류를 분류하고, 분류된 서류에서 통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세청의 UNIPASS에 등록 후 통관 처리 결과를 고객사에 메일로 전송하는 업무 절차를 햄프킹이 개발한 RPA를 통해 자동화한 사례
- 구체적으로 전 세계 수출기업으로부터 받은 다양한 형식의 인보이스를 광학문자판독기술(OCR: Optical Character Reader)을 통해 읽어낸 후,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통관업무에 불필요한 인보이스 내 항목(물품번호, 도착일,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통관업무에 필수적인 항목(품목, 수량, 단가, 금액 등)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UNIPASS에 입력하는 업무를 RPA를 통해 구현하는 프로젝트임
-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세비용 산정까지 AI와 RPA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관세통관 자동화 솔루션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RPA 도입을 통해 관세법인은 통관 처리 시간을 5시간에서 5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1차 RPA 사업을 통해 전체 통관업무의 30%를 자동화 하는데 성공함
- 햄프킹의 통관업무 RPA 개념도는 다음과 같음



자료 : [https://hempking.co.kr/RPA_Case/?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1748682&t=board\(2024.01.19.\)](https://hempking.co.kr/RPA_Case/?q=YToxOntzOjEyO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ljt9&bmode=view&idx=11748682&t=board(2024.01.19.))

제 V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결론

제 V 장 요약 및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 최근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다양한 국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디지털 무역의 확산에 따른 무역거래 형태의 다양화와 COVID-19 팬데믹의 발생으로 인해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초저가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함
 - 이러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관세행정상의 대응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의해 규정되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전자상거래물품의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필수 사항인 통관 과정에서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의 차단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대응이 요구되어지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세사의 대응방안의 제시임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관세행정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과 이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한 관세사의 대응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 관세법 제254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제254조의2(택송품의 특별통관), 제256조(통관우체국), 제256조의2(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등에 의해 특별통관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법 시행령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택송품의 특별통관),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8(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은 운송인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과 국제우편물 통관으로 구분됨

- 특송물품 통관은 물품가격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로 구분되며, 전자상거래물품 중 국제우편물로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들은 현장면세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일반 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목록통관과 현장면세통관의 경우 150\$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 면제와 면세 혜택을 부여함

□ 최근의 전자상거래물품의 급증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소비자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한 피해,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 발생

- 인체에 유해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용품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가품과 불량품 유통,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반품 및 환불절차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제방안이 미흡함
- 전자상거래물품이 거의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각종 인증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함
- 전자상거래 제도의 악용에 따른 조세 회피로 정부 재정 수입 감소가 우려됨
- 상술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5월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 또한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와 소액면세 악용 방지를 위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관세행정 상의 문제점 분석
 -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특별통관 방법의 불일치 문제
 - 자가소비용 수입물품 통관에 관한 규정의 상이함으로 인해 제도의 복잡성 존재
 -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적용되는 규정간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여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운송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짐

- 특송물품 통관과 국제우편물 통관은 일반 수입통관 적용기준의 상이함, 간이통관 적용기준의 상이함, 서식의 상이함으로 인한 정보 제공 범위의 상이함 등이 존재함

○ 소액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시 제공된 정보의 부정확성과 불일치 문제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과 목록통관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목록통관의 기재내용 부실로 인한 물품 정보가 원활한 통관을 위해 부족한 실정임
- 현재 목록통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HS Code 정보로는 불법 및 위해물품의 사전 차단이 어려움
-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사전정보제공 여부와 정보 범위가 불일치함

○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

-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은 별도의 인증없이 수입되고 있어 다양한 안전성과 국내 생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확대되고 있음
-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미흡

○ 전자상거래물품의 면세범위 적정성 논란

- 2023년 전자상거래물품(건수기준)은 면세통관 비중이 98%, 과세통관 비중이 2%로 대부분 면세로 수입되고 있음
- 소액 수입물품 면세점 한도는 OECD 대부분 회원국이 미화 50달러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범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누적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극단적으로는 1년동안 1명이 54,750달러의 상당의 물품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음

제2절 연구의 결론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관세행정 상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할 수 있음

○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특별통관 방법의 일치성 제고

- 전자상거래물품으로서 운송주체가 다른 것이지 물품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제7조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판단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와 제7조의 일치 필요함
- 이에 제7조의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제4조와 같이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국제우편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우편물의 경우 간이통관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특송물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의 고시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제우편물과 동일하게 특송물품 간이통관과 관련해서도 부과고지 내용과 간이세율 적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시 제출정보의 확대와 정확성 제고

- 통관목록 정보의 부실화 개선을 위해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목록통관을 불허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소액면세물품에 있어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의 정보제공 범위의 일치가 필요함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시 사전정보제공의 의무화가 필요함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에 필요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문번호, 주문 사이트 인터넷 주소(상품페이지가 활성화된 주소), 인터넷 게시 상품명, 주문단계에서의 총 상품금액 등의 거래정보와 HS Code 10단위 제출 등이 필요함

○ 소액 전자상거래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요건 확대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철저한 적용, 전자상거래 공급망의 의무 강화,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중인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에 대한 적용 강화와 대상 물품의 확대를 고려해 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공급망에서 확보한 정보 중 위해물품 선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제공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를 통해 거래정보, 특송업체를 통한 운송정보, 관세사를 통한 통관 적격성 정보 등에 대해 제공 의무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에 있어 인증기준을 제시한 목적이 국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인증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통관을 통해 위해물품에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수입 후 사후적 대응방안으로써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물품 적발과 관세청을 통한 수입 차단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소액면세범위 재검토

- 소액면세 시 관세와 내국세(부가세와 소비세)를 분리하여 내국세인 부가

세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액면세범위를 월 또는 년 단위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될 만큼의 면세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 1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규정한 관세법 제40조의 소액물품면세기준 등을 고려할 때, 소액면세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생산기반과 유통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는 해외직구면세범위를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 면세범위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통관 위험관리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 공급망들을 통해 통관에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를 전송받아 이를 기반으로 우범 및 위해물품을 사전에 선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관 위험관리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함
- 전자상거래 공급망으로부터 필수 정보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공급망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AI를 도입하여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 자체 위험과 수입물품 위험도를 통합한 통합위험도를 통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써 다음을 제시할 수 있음

○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

- 관세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에게 관세법과 규정을 해석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관세행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 급증과 관세행정 인력의 공급 부족과 인프라 부족으로 원활한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에서의 관세행정 역량 약화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관세사의 입지를 굳힐 필요가 있음
- 관세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와 특송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와 특송업체와의 협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함
- 지속적인 교육 이후 일정 계도기간을 제시하고 관세사 담당 업무 관련 특별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관세사와 특송업체의 개선을 요구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 시 강한 제재가 필요함
- 이러한 관세청의 활동은 관세사에게 있어 특송업체에게 적법한 업무 활동을 주장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에 있어 관세사 적정보수료 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에 있어 관세사의 낮은 보수료 수입임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세사 적정보수료 체계를 설계하여 이를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활용하여 화주 및 특송업체와 보수료 협상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의 보수요율 사례와 표준운임제의 표준위탁운임 등을 참고하여 적정보수요율 체계의 제도화를 위한 합리적인 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RPA 도입을 통한 관세사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

- 디지털 기술의 통합적인 적용은 신속 정확한 통관 업무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관세사 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비교적 도입 비용이 저렴하면서, 표준화 상태가 우수한 적하목록 정보를 활용해 작성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목록통관 과정에서 활용하기 유용한 RPA 도입을 제안함
- 또한 한국관세사회와 관세청이 협력하여 도입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연구자료>

- 강효원(2016),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정보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17-3.
- 곽은현(2020), 특송물품 중 간이통관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21-1.
- 관세청 보도자료(2022), 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물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막는다.
- 관세청 보도자료(2022),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 관세청(2023),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관세청(2023), 전자상거래물품 관련 통관우대업체 신설.
- 관세청(2023),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2024),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 대책 발표.
- 김충호(2017),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8-1.
- 비욘드엑스(2019), 주요 관세당국 전자상거래 전담조직-제도 개편동향 연구.
- 심재현(2017), 국제우편물 통관제도 개선 연구.
- 송선욱(2022), 미국 세관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실험 프로젝트 분석과 시사점, 관세학회지 23-2.
- 송선욱(2024), 국경간 전자상거래에서 세관의 효과적인 불법물품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5-2.
- 이홍숙(2020), 중국 국경간 B2C 전자상거래 수입 관련 법률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7권.
- 조원길(2022), 디지털무역 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3-1.
-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2024), 중소기업 53%, “과도한 중국산 직구 면세로 피해 입어”.
- 한국관세신문(2024),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주요국의 특송물품 통관제도 비교연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제 해외사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CBP Expands 321 Data Pilot Participation (Release Date Thu, 02/16/2023)
Daniela Coppola(2024), E-commerce as share of total retail sales
worldwide 2021-2027.
eMarketer(2024). Global Ecommerce Forecast 2024.
Statista(2024a). E-commerce retail sales CAGR 2024-2028, by country.
WCO(2024). Cross-Border e-Commerce/Challenges faced by Customs
administrations.

<관련 법령>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세청 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enara>)
한국관세사회(<http://www.krcaa.or.kr/main.aspx>)
<http://www.cbp.gov>